

# 충남 well-aging 강화 워크숍

- 일 시 : 2016. 2. 24(수), 10:30
-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충남 well-aging 강화 워크숍 계획

- ◆ 고령화시대 지역 노인의 참살이 강화를 위한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할 필요성이 대두됨
- ◆ 충남은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 개요

○ 때·곳 : 2016. 2. 24(수) 10:30~12:00/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참 석 : 분야별 전문가, 충남도청 관련 공무원, 충남연 연구원

• 발표자

- 2015년 충남 노인·사회복지 업무 현황(충남도 팀장)

• 토론자

- 오복경 관장(충남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강은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경 교수(나사렛대학)

## ○ 내 용

- 충남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
- 노인복지의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업 및 법·제도적 개선점

## ■ 진행 계획

시간	내용	비고
10:30-10:4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40-11:00	충남 노인·사회복지 현황 발표	충남도청
11:00-11:50	토론	토론자
11:50-11:55	마무리	좌장



# 목 차

## [발제문]

1. 2015년 충남 노인·사회복지 업무 현황 ..... 3
2. 웰 다잉법(well-dying)의 이해 ..... 131
3. 윤리와 도덕의 정의 ..... 159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김병만 팀장-

## [토론문]

1. 오복경 관장(충남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179
2. 강은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1
3. 김혜경 교수(나사렛대학교) .....185



[발제문]

1. 2015년 충남 노인·사회복지 업무 현황
2. 웰 다잉법(well-dying)의 이해
3. 윤리와 도덕의 정의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김병만 팀장



## 2015년 충남 노인·사회복지 업무 현황



### 1 노인인구 현황

(2015.12.31기준 / 단위 : 명)

구분	계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 89세	90~ 94세	95~ 99세	100세 이상
계	341,214	95,903	84,428	76,011	52,160	22,599	7,721	1,712	680
천안	54,835	17,387	13,688	11,410	7,387	3,372	1,185	270	136
공주	23,779	6,374	5,888	5,352	3,780	1,664	547	138	36
보령	22,460	6,568	5,617	4,929	3,275	1,448	469	117	37
아산	33,862	9,927	8,578	7,446	4,929	2,002	704	198	78
서산	27,148	7,772	6,672	5,824	4,254	1,754	676	150	46
논산	27,608	7,325	6,862	6,251	4,379	1,986	601	138	66
계룡	3,595	1,046	870	755	530	273	93	22	6
당진	26,853	7,647	6,530	6,077	4,019	1,737	647	141	55
금산	14,327	3,726	3,607	3,362	2,319	921	315	47	30
부여	20,530	5,106	4,933	4,767	3,461	1,611	513	104	35
서천	17,453	4,476	4,179	4,013	2,839	1,377	456	83	30
청양	10,179	2,394	2,357	2,531	1,836	783	223	37	18
홍성	20,625	5,517	4,962	4,792	3,358	1,372	486	90	48
예산	21,607	5,731	5,340	5,101	3,455	1,384	455	106	35
태안	16,353	4,907	4,345	3,401	2,339	915	351	71	24

## ② 노인인구 비율(시도별)

(2015.12.31. 기준 / 단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3.1	12.6	14.6	12.7	10.7	11.3	10.9	8.8	10.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5	16.9	14.8	16.4	17.8	20.5	17.7	13.8	13.8

○ 전국노인 인구비율 13.10%(시도별 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順)

## ③ 독거노인 현황

(2015.12.31. 기준 / 단위: 명)

시 군	독 거 노 인 수			65세이상 노 인 수
	계	기초생활수급노인	일반노인	
계	93,766	15,810	77,956	
천 안 시	12,288	1,989	10,299	
공 주 시	7,570	1,152	6,418	
보 령 시	7,492	967	6,525	
아 산 시	8,697	1,358	7,339	
서 산 시	6,647	782	5,865	
논 산 시	8,313	1,429	6,884	
계 룡 시	848	66	782	
당 진 시	6,634	541	6,093	
금 산 군	4,182	517	3,665	
부 여 군	6,233	883	5,350	
서 천 군	5,413	4,068	1,345	
청 양 군	3,325	348	2,977	
홍 성 군	5,341	681	4,660	
예 산 군	6,249	645	5,604	
태 안 군	4,534	384	4,150	

#### 4] 평균수명 증가 추이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50
52.4	61.9	65.7	71.3	76.0	79.6	81.5	83.1	86.0

※ 통계청(2006.11)장래인구 추계결과, 2008년 생명표(2009.12)

#### 수 각국의 고령화 추이 비교

구 분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7%→14%	14%→20%
프랑스	1864년	1979년	2019년	115년	40년
미 국	1942년	2014년	2030년	72년	16년
영 국	1929년	1976년	2020년	47년	44년
독 일	1932년	1972년	2010년	40년	38년
일 본	1970년	1994년	2006년	24년	12년
한 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자료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3), 인구통계자료집.

#### 6] 충남도 고령화 추이

구분		2000	2005	2007	2010	2015	2020	2023	2025	2030
충남	천명	215	262	286	302	332	370	410	443	524
	%	11.2	13.3	14.3	15.4	16.7	18.5	20.4	22.1	26.1

※ 통계청 추계자료(우리도 2007년 고령사회, 2023년 초고령사회 진입 )

#### 7] 시군별 경로당 현황

(2015.12.31.기준/단위:개소,명)

시군명	분회수	경로당수	총회원수	1일 이용인원	비고
계	208	5,596	218,490	16.8	
천안시	30	688	23,963	16.5	
공주시	16	410	16,253	18.2	
보령시	16	390	15,720	16.4	
아산시	17	510	19,116	12.1	
서산시	15	372	15,983	13.6	
논산시	15	510	20,630	15.8	
계룡시	3	35	1,372	12.0	
당진시	15	321	17,595	25.1	
금산군	10	323	10,438	18.1	
부여군	16	457	16,956	16.4	
서천군	13	326	11,313	16.8	
청양군	10	303	7,842	20.9	
홍성군	11	363	14,423	17.1	
예산군	13	362	16,500	17.0	
태안군	8	226	10,386	15.7	

8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재가시설) 현황

(2015. 11. 30. 기준/단위: 개)

종 류	시 설	시 설 현 황		
		시설수	입소인원 (정원)	종사자수
합 계		6,102	292,339 (21,394)	6,621
주거 복지 (정원)	소 계	24	341 (638)	121
	양로시설	10	257 (518)	81
	노인공동생활가정	14	84 (120)	40
의료 복지 (정원)	소 계	274	6,109 (8,688)	5,001
	요양시설	164	5,283 (7,719)	4,307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10	826 (969)	694
여가 복지	소 계	5,690	282,040 (11,157)	165
	노인복지관 (서산, 논산 부여, 청양 미설치)	15	54,824	165
	경로당 (행복경로당)	5,596 (180)	218,490 (11,157)	-
	노인교실	79	8,726	
재가 복지	소 계 (정원)	114	3,849 (911)	1,334
	방문요양서비스	32	1,245	798
	주야간보호서비스 (정원)	30	530 (830)	250
	단기보호서비스 (정원)	7	10 (81)	27
	방문목욕서비스	22	150	177
	재가지원서비스	23	1,914	82

## 9 장사시설 현황(화장장 등)

(2015. 12. 31. 기준/단위: 개)

시군별	화장장	묘 지		봉 안 당			자연장지 (사설)	장사문화	장례식장
		공설	법인	공설	법인	종교단체		법인	
계	3	9	7	16	3	9	62	1	73
천안시	1		2	1		1	2	1	13
공주시	1			1			15		6
보령시		1		1			1		5
아산시			1	1	1	1	19		9
서산시		1		1		2	4		3
논산시			1	1		2	7		7
계룡시			1	1					
당진시		4		2		1	8		5
금산군			1	1		2			2
부여군					1				6
서천군				1					4
청양군		1		1					2
홍성군	1	1		1	1		1		5
예산군		1	1	2			2		4
태안군				1			3		2

## 기초연금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시군비
		합계	소계	국비	도비	
2015년	242,000명	518,856,838	449,403,678	431,013,880	18,389,798	69,453,160
2016년	244,000명	541,001,473	467,762,393	449,452,623	18,309,770	73,239,080
총 감	2,000명	22,144,635	18,358,715	18,438,743	△80,028	3,785,920

※ 재원율 : 국비 70~90%, 도비 2~6%, 시군비 8~24%

## ■ 사업개요

-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약 70%)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8만원 이하인 자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내 용 : 단독가구 월20,000~202,600원/부부가구 월40,000~324,160원 지급
- 지 급 액 : 소득인정 기준액별 차등지급(매월 25일 지급)
- 산출기초 : 충남 244,000여명(충남 만65세 이상 어르신 339천명 중 72%)  
- 244,000명×187,000원(1인당 평균수령액)×12개월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기초연금('15.1~12월 **242,640명 5,226억원**) 지급  
- 전액수급자:227,781명/감액수급자:14,859명(1인당 평균수령액 181천원)
- (향후계획) '16. 상반기 중 부정수급대상자 일제조사, 부당이득금 환수

■ 계상이유 : 대상자 증 3천명 / 사업비 증 184억원 (국 184)

- '15년 10월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5%→4%)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노인 증가(241천명→244천명) 예상
- 또한 '16년도 공주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80→90%)에 따라 도비 부담액은 80천원 감소

시군별 기초연금 예산현황 내역

(단위: 명, 천원)

시군명	지급 인원	예산액			
		계 (100%)	국고 (70~90%)	도비 (2~8%)	시·군비 (8~24%)
계	244,000	541,001,473	449,452,623	18,309,770	73,239,080
천안시	34,245	74,270,499	51,989,349	4,456,230	17,824,920
공주시	17,212	38,688,385	30,950,708	1,547,536	6,190,141
보령시	17,473	40,013,065	36,011,759	800,261	3,201,045
아산시	21,813	49,309,101	34,516,371	2,958,546	11,834,184
서산시	19,361	42,277,826	33,822,261	1,691,113	6,764,452
논산시	21,473	48,423,770	43,581,393	968,475	3,873,902
계룡시	2,279	5,205,562	3,643,893	312,334	1,249,335
당진시	16,477	35,950,498	28,760,398	1,438,020	5,752,080
금산군	11,645	25,893,859	23,304,473	517,877	2,071,509
부여군	16,638	36,809,862	33,128,876	736,197	2,944,789
서천군	14,288	32,346,416	29,111,775	646,928	2,587,713
청양군	8,230	18,219,288	16,397,359	364,386	1,457,543
홍성군	15,471	34,157,179	30,741,461	683,144	2,732,574
예산군	15,573	34,034,720	30,631,248	680,694	2,722,778
태안군	11,822	25,401,443	22,861,299	508,029	2,032,115

# 노인사회활동(구 일자리)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14,245명	28,434,200	18,482,230	14,217,100	4,265,130	9,951,970
2016년	15,500명	31,000,000	20,150,000	15,500,000	4,650,000	10,850,000
증 감	1,255명	2,565,800	1,667,770	1,282,900	384,870	898,030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참여 희망노인에게 사회활동 기회제공
- 참여자격 : 공익활동(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시장형(60세이상)
- 활동내용
  - 공익활동 : 노노케어(독거노인 안부확인),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봉사 활동등
  - 시장형(취창업형) : 공동작업(영농사업 등) 및 제조판매(콩나물, 두부 제조판매), 거리 환경개선, 폐현수막 재활용,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 활동시간 및 지원내용 : 공익활동(월 30시간 활동, 20만원)
  - ※ 시장형사업, 최저임금(6,030원) 이상 지급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339개 사업 16,763명 참여
- 향후계획
  - '16년 사업계획심사 16,965명\*(2월 한) 및 복지부 확정내시 기준 예산 확보
  - \* 공익활동 12,957명, 시장형 3,008명, 인력파견형 1,000명

구 분	사업량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액	15,500	31,000,000	15,500,000	4,650,000	10,850,000
확정내시	16,965	34,104,110	17,052,055	5,115,616	11,936,439
증감액(확보)	1,465	3,104,110	1,552,055	465,616	1,086,439

## ■ 계상이유

- 노인사회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월 20만원) 및 부대경비 등 지원을 위해 계상

## 참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구분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참여 자격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만60세 이상
활동 내용	<p><b>(노노케어)</b> 독거노인, 노부부, 조손가족 말벗, 안부확인 등</p> <p><b>(취약계층지원)</b> 장애인, 한부모 가정 봉사, 청소년선도활동 등</p> <p><b>(공공시설지원)</b> 공원, 놀이터 문화재 시설 등 공공시설 봉사 활동</p> <p><b>(경륜전수지원)</b> 건강체조지도, 문화 공연 및 체험활동 지원 등</p>	<p><b>(공동작업형)</b> 지역영농(콩, 상추 재배 등), 공동작업장(쇼핑백제작)</p> <p><b>(제조판매형)</b> 비누, 두부 제조판매, 아파트 택배, 세차, 재활용품 수집 등</p> <p><b>(전문서비스형)</b> 주정차질서계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사회 환경개선, 스쿨존 교통지원</p>	<p><b>수요처 기준에 따름</b></p>
참여 인원	12,957명	3,008명	1,000명
참여 기간	9개월, 12개월(노노케어)	연중	연중
참여 시간	월 30시간 활동시, 20만원 지원	<p>수요처 기준에 따름 ※단, 최저임금 6,030원 이상 지급</p>	

# 노인사회활동 전담요원 운영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1명	19,800	19,800	9,900	9,900	
2016년	1명	32,500	32,500	10,200	22,300	
증 감		12,700	12,700	300	12,400	

※ 재원율 : 국비 31.4%, 도비 68.6%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구, 일자리) 전담요원

○ 지원내용 : 전담요원(공무직)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무직 인건비 기준 적용(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13.8월 전담요원으로 채용 → 「고용노동부 전환지침」 및 「비정규직 근무실태조사 및 컨설팅」 결과, 무기계약직 전환('14.10월)

→ 전환 후, 공무직 인건비 적용으로 급여수준(20백만원 → 32백만원) 등 처우개선

○ 전담요원 역할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량, 예산배분 및 사업 계획 심사지원, 시군별 부진사업 및 미시행 사업 파악 등

○ 산출기초 : 기본급(15,074천원) 상여금(5,025천원), 시간외수당 등(12,401천원)

## ■ 2015년 추진실적

○ '15년 사업계획 심사 등 : 339개사업 14,463명

○ 부진사업단 독려 등 사업단 모니터링

## ■ 계상이유 : 공무직 인건비 기준 적용 및 국비 지원액 증가

○ 공무직 인건비 기준 적용 및 국비 지원단가 증액(월165만원→170만원)

# 노인사회활동 경진대회 참가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1식	10,000	10,000	5,000	5,000	
2016년	1식	10,000	10,000	5,000	5,000	
증 감		0	0	0	0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50%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노인사회활동 참여노인 및 수행기관 직원 등 300여명
- 지원내용 : 노인일자리 박람회(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석에 따른 제반 경비 지원

※ 참여자 숙박비, 차량비, 단체복, 모자 구입비 등

## ■ 2015년 추진실적

- 전국행사 미 개최로 추진실적 없음(예산 전액 삭감)

## ■ 계상이유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인식개선 및 민간 노동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박람회 개최, 동 행사 참여노인에 대한 제반소요비용 지원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개소	5,000	5,000	
2016년	1개소	4,750	4,750	
증 감		△250	△25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도연합회 부설 노인취업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비 등 제잡비
- 센터기능 : 취업 지원 및 시군 취업현황 파악 노인회 중앙회에 보고 등 (사업비는 대한노인회를 통해 직접 도연합회에 지원)
- 도비지원액 용도 : 홍보비, 취업알선 및 면접 동행 시 음료 구입비 등 [취업지원센터 현황]

직원	예산액(천원)			
	계	인건비	4대보험료	운영비
2명	58,000	44,000	4,000	10,000

※인건비 등 예산은 대한노인회(중앙)에서 도연합회로 직접교부

## ■ 2015년(10월말) 추진실적

- 취업희망(3,868명) → 취업\*(1,712명)

\* 아파트 경비, 생산직, 청소 등

## ■ 계상이유

- 취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무실 수용비 및 활동비 지원을 위한 계상

#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5명	18,000	5,400	12,600
2016년	15명	18,000	5,400	12,600
증 감		0	0	0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부설 취업지원센터장 활동비 지원
  - \* 센터장 : 인건비 전액 국비지원, 주요역할은 취업상담, 취업알선, 업체개발, 동행면접 등
- 사업량 : 15개소(시·군별 1명) ※1명당 1,200천원 지원
- 산출기초
  - 15명 × 100천원(월 지급액) × 12개월

## ■ 2015년 추진실적

- 취업희망(3,868명) → 취업(1,580명)
  - \* 아파트 경비, 생산직, 청소 등

## ■ 계상이유

- 센터장 활동비 지원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노인 인력 수요 업체(기관)발굴 및 취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민간취업 활성화를 위해 계상

#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개소	60,000	30,000	30,000
2016년	3개소	90,000	45,000	45,000
총 감	1개소	30,000	15,000	15,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초기설치비 지원
- 대 상 : 3개 시군(천안, 보령, 청양)
- 지원금액 : 개소당 30백만원
- 사업내용 : 시니어클럽 초기설치를 위한 장비 및 자재구입비
- 산출기초 : 30백만원 × 3개소

[참고] 15.12월말 기준 시니어클럽 운영현황

(단위 : 명, 월, 천원)

클럽명	사업명	참여인원	평균참여개월	월평균보수	매출액
<b>합 계</b>	<b>총 23개 사업 운영</b>	<b>459</b>	<b>8.0</b>	<b>260</b>	<b>522,978</b>
아산	영농로컬푸드 사업 등 4개 사업	119	8.0	222	121,747
서산	아파트 택배 등 8개 사업	111	9.4	306	181,245
논산	건강즙 등 2개 사업	51	3.6	166	7,226
당진	실버카페 등 3개 사업	71	6.5	192	57,859
부여	두부사업단 등 6개 사업	107	8.9	256	154,901
예산	'15.12월부터 사업단 운영중				
태안	'15.12월부터 사업단 운영중				

## ■ 2015 추진실적

- 3개소(논산, 예산, 태안) 신규설치

## ■ 계상이유

- 시니어클럽 3개소(천안, 보령, 청양) 신규설치에 따른 계상

#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7개소	1,110,000	222,000	888,000
2016년	10개소	2,100,000	630,000	1,470,000
증 감	3개소	990,000	408,000	582,000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니어클럽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지원
- 사업량 : 10개소(기존 7개소+신규 3개소)
- 지원금액 : 시장형 사업단 규모별 차등지원 150~210백만원

구 분	사업단 2개이하	사업단 3개	사업단 4개	사업단 5개 또는 4개 이상 이고 참여자 100명이상
지원금액 (단위:천원)	150,000	170,000	190,000	210,000

- 운영비 : 종사자(5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
- 사업비 :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 사업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가능

## ■ 2015 추진실적

- 3개소 신규설치(논산, 예산, 태안)

## ■ 계상이유 : 사업량 3개소 증 및 도비부담을 조정(20%→30%)

- 시니어클럽 3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사업량 확대 및 도비부담을 상향 조정(20%→30%)에 따른 증액

\*3개소 : 천안, 보령, 청양 예정(수요조사 결과)

(단위 : 명, 개월, 천원)

구분	사업명	2015년				2014년			
		참여인원	평균참여개월	월평균보수	매출액	참여인원	평균참여개월	월평균보수	매출액
합계	총 23사업	459	8.0	260	522,978	193	9.0	262	267,083
아산	소계(4개사업)	119	8.0	222	121,747	57	6.6	244	81,957
	영농로컬푸드사업	28	6.0	219	39,547	19	5.9	208	32,834
	재활용품수집사업	61	8.9	236	46,874	13	7.5	358	24,916
	청정세탁기코디사업	17	6.5	228	14,960	13	3.9	234	5,188
	할머니국수사업	13	10.5	164	20,366	12	9.6	187	19,019
서산	소계(8개사업)	111	9.4	306	181,245	69	9.4	264	72,187
	E.M천연비누제조	12	8.6	218	11,856	8	10.4	259	5,717
	ok6070 아파트택배	10	9.4	593	44,108	11	8.9	473	32,911
	국산콩 두부 제조	4	12.0	418	14,773	4	12.0	207	5,996
	꽃별이(스텐레스수세미)	22	9.0	362	42,903	16	8.6	292	15,696
	마늘탈피	10	9.3	362	20,599				
	전자부품(라별이)	11	9.1	352	21,130				
	지역영농(방풍농장)사업	34	9.4	183	15,545	22	8.9	180	5,966
	지역영농사업	8	11.0	254	10,329	8	11.0	214	5,900
논산	소계(2개사업)	51	3.6	166	7,226				
	건강즙사업단	23	3.7	156	2,545				
	특용작물영농로컬푸드	28	3.6	174	4,681				
당진	소계(3개사업)	71	6.5	192	57,859				
	행복뜰공동작업장	21	8.6	178	6,737				
	실버카페	23	3.9	160	17,641				
	우리콩 우리두부	27	7.0	221	33,481				
부여	소계(6개사업)	107	8.9	256	154,901	67	11.0	251	112,939
	두부사업단	15	3.3	179	4,772				
	목공예 사업단	6	10.3	428	21,526	7	9.3	349	16,841
	쇼핑백제작사업단	54	11.0	257	94,601	52	11.4	246	76,995
	재활용품수집사업단	12	10.0	272	16,032				
	천연비누사업단	10	6.8	194	5,958				
	할머니손맛사업단	10	6.0	172	12,010	8	10.0	205	19,102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 계	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2,412명	7,293,860	6,199,780	5,105,700	1,094,080	1,094,080
2016년	2,419명	6,357,467	5,403,847	4,450,227	953,620	953,620
증 감	△7	△936,393	△795,933	△655,473	△140,460	△140,460

※ 재원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돌봄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장기요양등급외 AB자로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자
- 제공기관/인력 : 76개소 / 896명 ※ 1인당 2.7명 서비스
- 수혜인원(사업량) : 2,419명
- 서비스내용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외출동행 등
- 추진(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게 대한 지원)
- 지원액 : 월 19~34만원(본인부담 무료~64천원), 바우처 지원

## ■ 2015. 추진실적

- 서비스 제공인원 : 2,419명, 서비스 제공인력(요양보호사) 인건비 : 896명, 6,357백만원 지급

## ■ 계상이유 : 사업비 감 795,933천원(국비655,473, 도비 140,460)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돌봄 부담완화로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시군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 산 액			
		계(100%)	국 고 (70%)	도 비 (15%)	시·군비 (15%)
계	2,419	6,357,467	4,450,227	953,620	953,620
천안시	199	466,806	326,764	70,021	70,021
공주시	208	558,301	390,811	83,745	83,745
보령시	155	496,167	347,317	74,425	74,425
아산시	113	312,585	218,809	46,888	46,888
서산시	131	303,832	212,822	45,505	45,505
논산시	386	997,834	698,484	149,675	149,675
계룡시	12	29,188	20,432	4,378	4,378
당진시	83	215,792	151,054	32,369	32,369
금산군	172	394,535	276,175	59,180	59,180
부여군	281	813,982	569,788	122,097	122,097
서천군	287	784,329	548,889	117,720	117,720
청양군	90	260,726	182,508	39,109	39,109
홍성군	174	414,168	289,918	62,125	62,125
예산군	91	202,474	141,732	30,371	30,371
태안군	37	106,748	74,724	16,012	16,012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 계	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494	5,063,000	4,303,550	3,544,100	759,450	759,450
2016년	556	5,811,600	4,939,860	4,068,120	871,740	871,740
증 감	62	748,600	636,310	524,020	112,290	112,290

※ 재원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 독거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필요가 높은 독거노인
- 서비스내용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
- 사업량 : 556명(서비스관리사 26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530명)
- 총사업비 : 5,811,600천원(국비 4,068,120, 도비 871,740, 시군비 871,740)
- 산출기초 : 5,811,600천원

### ① 인건비 : 4,843,950천원

- 서비스관리사 : 1,460,000천원×26명×12개월 = 455,520천원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690,000원×530명×12개월 = 4,388,400천원

### ② 전체 운영비 : 612,900천원

- 4대보험료 460,217, 교육참여경비 27,800, 흑한/흑서기 활동비 31,800, 교통비 29,430, 상해보험료 26,500, 수행기관운영비 29,033, 거점기관운영비 8,120천원

### ③ 퇴직적립금 : 354,750천원

## ■ 2015. 추진실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 : 13,900명, 서비스관리사생활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 계상이유 : 사업비 증 636,310천원(국비 524,020, 도비 112,290)

-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관리사, 생활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시군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시군명	사 업 량			예 산 액			
	계	서비스 관리자	생 활 관리사	계(100%)	국 고 (70%)	도 비 (15%)	시·군비 (15%)
계	556	26	530	5,811,600	4,068,120	871,740	871,740
천안시	61	4	57	657,917	461,388	98,265	98,264
공주시	44	2	42	460,097	322,009	69,044	69,044
보령시	37	2	35	387,445	271,154	58,146	58,145
아산시	42	2	40	440,125	308,026	66,050	66,049
서산시	39	2	37	406,766	284,676	61,045	61,045
논산시	42	2	40	438,725	307,046	65,840	65,839
계룡시	7	1	6	80,303	56,153	12,075	12,075
당진시	42	2	40	438,133	306,634	65,749	65,750
금산군	33	1	32	337,468	236,167	50,650	50,651
부여군	50	2	48	519,980	363,924	78,028	78,028
서천군	30	1	29	309,474	216,572	46,451	46,451
청양군	30	1	29	308,144	215,642	46,251	46,251
홍성군	32	1	31	329,455	230,554	49,450	49,451
예산군	39	2	37	408,086	285,596	61,245	61,245
태안군	28	1	27	289,482	202,579	43,451	43,452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자체)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556개소	1,154,812	230,962	923,850
2016년	556개소	1,154,812	230,962	923,850
증 감				

※ 재원율 : 도비 20%, 시군비80%

## ■ 사업개요

- 대 상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 독거노인 중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필요가 높은 독거노인
  - 사업규모 : 556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교통비, 전화비 등 부대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교통비(월 10만원), 전화비(월 5만원), 교육비 등
  - 산출기초 : 운영비 1,154,812천원
    - 교통비 : 100,000원×556명×12개월 = 667,200천원
    - 전화비 : 50,000원×556명×12개월 = 333,600천원
    - 교육비등 : 154,012천원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 2015. 추진실적

- 2015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사 556명, 교통비 및 전화비 1,154백만원 지급

## ■ 계상이유

- 정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사의 교통비·전화비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지원(자체)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비 고
계	556	1,154,812	230,962	923,850	
천안시	61	126,697	25,339	101,358	
공주시	44	91,388	18,278	73,110	
보령시	37	76,849	15,370	61,479	
아산시	42	87,234	17,447	69,787	
서산시	39	81,003	16,200	64,803	
논산시	42	87,235	17,447	69,787	
계룡시	7	14,539	2,908	11,631	
당진시	42	87,234	17,447	69,787	
금산군	33	68,541	13,708	54,833	
부여군	50	103,850	20,770	83,080	
서천군	30	62,310	12,462	49,848	
청양군	30	62,310	12,462	49,848	
홍성군	32	66,464	13,293	53,171	
예산군	39	81,002	16,200	64,803	
태안군	28	58,156	11,631	46,525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구축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 업 량 (설치가구)	재 원 별 (천원)				
		합 계	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1900	627,000	470,250	313,500	156,750	156,750
2016년	330	108,896	81,672	54,448	27,224	27,224
증 감	△1,570	△518,104	△388,578	△259,052	△129,526	△129,526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 가정에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6종센서)을 구축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신속대처

※ 6종센서 :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화재감지·가스감지·출입감지·응급호출기

- 사업량 : 330대
- 총사업비 : 108,896천원(국비 54,448, 도비 27,224, 시군비 27,224)
- 산출기초
  - 설치비 : 333,000원×330대 = 108,896천원

## ■ 2015. 추진실적

-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맥내장비(6종 센서)설치 완료
  - ※ 보건복지부의 설치기준 확정 지연(11월 확정)으로 사업추진 지연

## ■ 계상이유 : 사업비 감 388,578천원(국비 259,052, 도비 129,526)

-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응급안전시스템(6종센서)구축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16년)	예 산 액			
		계(100%)	국 고 (50%)	도 비 (25%)	시·군비 (25%)
합 계	330	108,896	54,448	27,224	27,224
천안시	56	18,480	9,240	4,620	4,620
공주시	90	29,700	14,850	7,425	7,425
보령시	0	0	-	-	
아산시	0	0	-	-	
서산시	0	0	-	-	
논산시	0	0	-	-	
계룡시	0	0	-	-	
당진시	94	31,020	15,510	7,755	7,755
금산군	0	0	-	-	
부여군	0	0	-	-	
서천군	0	0	-	-	
청양군	40	13,200	6,600	3,300	3,300
홍성군	50	16,496	8,248	4,124	4,124
예산군	0	0	-	-	
태안군	0	0	-	-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 업 량 (설치가구)	재 원 별 (천원)				
		합 계	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13,558	1,382,750	691,375	691,375		691,375
2016년	9,715	1,452,504	726,252	726,252		726,252
증 감	3,842	69,754	34,877	34,877		34,877

※ 재원율 : 국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댁내장비유지 보수비 및 관리요원 인건비
- 사업대상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 가정
- 사 업 량 : 9,715대
- 총사업비 : 1,452,504천원(국비 726,252, 시군비 726,252)
- 산출기초 : 운영비 1,452,504천원(인건비 816,480, 운영비 636,024)
  - ① 인건비 : 1,620,000×42명×12월=816,480천원
  - ② 운영비 : 636,024천원(4대보험67,200, 장비유지비 492,960, 기관운영비 45,000, 지원운영비 30,864)

## ■ 2015. 추진실적

-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댁내장비 전수점검
  - 점검기간 : '15, 4월 ~ 6월 (3개월간) - 사업량(점검대수) : 9,715대
  - 점검내용 : 응급안전돌보미 정상작동 및 소방서 등에 연계 여부
  - 점검결과 : 설치장소 부적정 또는 고장난 장비는 교체설치
    - 정상작동 8,061, 비정상 작동 1,654 (수리완료 1,306, 재 설치 348)

## ■ 계상이유 : 사업비 증 34,877천원(국비)

- 응급안전시스템(댁내장비)의 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독거노인 댁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신속 대응 인건비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 산 액			
		계(100%)	국 고 (50%)	도 비 (%)	시·군비 (50%)
계	9,715	1,452,504	726,252		726,252
천안시	255	24,740	12,370		12,370
공주시	89	30,026	15,013		15,013
보령시	144	36,520	18,260		18,260
아산시	257	43,142	21,571		21,571
서산시	1864	282,154	141,077		141,077
논산시	1483	236,134	118,067		118,067
계룡시	13	23,778	11,889		11,889
당진시	265	43,174	21,587		21,587
금산군	92	29,422	14,711		14,711
부여군	1552	69,352	34,676		34,676
서천군	103	32,446	16,223		16,223
청양군	115	32,446	16,223		16,223
홍성군	1352	201,610	100,805		100,805
예산군	1294	201,610	100,805		100,805
태안군	837	165,950	82,975		82,975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 계	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3	180,000	142,200	126,000	16,200	37,800
2016년	3	150,000	118,500	105,000	13,500	31,500
증 감	0	△30,000	△23,700	△21,000	△2,700	△6,300

※ 재원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관계 취약 독거노인에게 심리치료, 건강,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 지원
- 사업량 : 3개소(보령·아산 노인복지관 / 공주 노인복지센터)
- 산출기초  
- 50,000천원 × 3개소 = 150,000천원

## ■ 2015. 추진실적

- 3개 분야 20개 프로그램 92명
  - 은둔형 고독사위험군 : 프로그램 6개 (19명)
  -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 프로그램 7개 (14명)
  - 우울자산 고독사형 프로그램 7 (59명)

## ■ 계상이유 : 사업비 감 23,700천원(국비 21,000, 도비 2,700)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를 통한 위기 해결과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 산 액			
		계(100%)	국 고 (70%)	도 비 (9%)	시·군비 (21%)
계	3	150,000	105,000	13,500	31,500
공주시	1	50,000	35,000	4,500	10,500
보령시	1	50,000	35,000	4,500	10,500
아산시	1	50,000	35,000	4,500	10,500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 계	소 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320	150,530	127,950	105,370	22,580	22,580
2016년	390	196,570	167,085	137,600	29,485	29,485
증 감	70	46,040	39,135	32,230	6,905	6,905

※ 재원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인단기 가사서비스 대상자 돌봄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모두 75세 이상자)의 부부 노인가구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자로서 최근 2개월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자
- 서비스내용
  - 가사 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신변 활동지원 :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 서비스 제공기간/시간 :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1회당 2시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량 : 390명
- 지원단가(시간당) : 평일 9,800, 공휴일 10,540원

## ■ 2015. 추진실적

-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제공 : 390명, 196,570천원(바우처 지원)

## ■ 계상이유 : 사업비 증 39,135천원(국비 32,230, 도비 6,905)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모두 75세 이상자)의 부부 노인가구로서 일시적 활동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산액			
		계(100%)	국고(70%)	도비(15%)	시·군비(15%)
계	390	196,570	137,600	29,485	29,485
천안시	63	31,762	22,233	4,764	4,765
공주시	19	9,576	6,704	1,436	1,436
보령시	19	9,576	6,704	1,436	1,436
아산시	36	18,144	12,700	2,722	2,722
서산시	30	15,120	10,584	2,268	2,268
논산시	36	18,144	12,701	2,722	2,721
계룡시	9	4,536	3,176	680	680
당진시	26	13,104	9,172	1,966	1,966
금산군	20	10,080	7,056	1,512	1,512
부여군	25	12,600	8,820	1,890	1,890
서천군	20	10,080	7,056	1,512	1,512
청양군	14	7,056	4,940	1,058	1,058
홍성군	30	15,120	10,584	2,268	2,268
예산군	23	11,592	8,114	1,739	1,739
태안군	20	10,080	7,056	1,512	1,512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2개소	114,864	74,662	57,432	17,230	40,202
2016년	2개소	114,864	74,662	57,432	17,230	40,202
증 감	-	-	-	-	-	-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 사업개요

- 대 상 : 논산 죽림노인복지센터, 서산 노인요양병원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
- 내 용 : 지역사회자원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전담인력 인건비 및 여비 지원
- 지 급 액 : 114,864천원 (1개소 57,432천원)
- 산출기초 : 인건비 103,584천원, 여비 11,280천원
  - ① 인건비: 2개소 × 2명 × 2,158천원(연간)= 103,584천원
  - ② 여 비: 2개소 × 2명 × 60천원 × 47주 = 11,280천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인건비, 여비 114,864천원 지원
- (향후계획) 인건비, 여비 114,864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지역중심의 공공·민간 서비스 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하여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31개소	177,000	53,100	123,900
2016년	36개소	243,600	73,080	170,520
증 감	5개소	66,600	19,980	46,620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대 상 : 자연마을 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단독주택 등을 개보수
- 지 원 : 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비(시설보수 및 침구·가재도구 등)
- 지원기준 : 운영비-개소당 5,100천원, 인프라 구축비  
-신규설치 개소당 12,000천원
- 내 용 : 독거노인의 공동취사 및 숙박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지원
- 산출기초
  - 운영비 : 36개소(기존31+신규5)×5,100천원=183,600천원
  - 인프라 구축비 : 신규 5개소×12,000천원=60,000천원
  - \* 초기 설치비 : 침구류, 냉장고, 숙식을 위한 개보수비 등
- ※ 2016년 신규 설치 : 서산1, 부여2, 청양2
- 사업위치 : 12개 시·군(미설치 시군 → 아산, 계룡, 홍성)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전수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5. 3. 9.~4. 30.      - 대 상 : 28개 전 시설
  - 점검방법 : 서면심사 (28개 시설) 후 8개 시설 현지점검
  - 점검결과 : 미운영중인 3개소(천안, 아산, 계룡), 폐쇄조치
- (향후계획) '16. 상반기 중 5개소 신규설치(서산1, 부여2, 청양2) 38명

## ■ 계상이유 : 사업량 증 5개소 / 사업비 증 19,980천원 (도)

- 독거노인의 공동체생활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해 5개소 추가 설치 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비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생활인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36개소 (5)	256명	243,600	73,080	170,520
천안시	1	5	5,100	1,530	3,570
공주시	3	20	15,300	4,590	10,710
보령시	1	5	5,100	1,530	3,570
아산시	-		-	-	-
서산시	4 (1)	35	32,400	9,720	22,680
논산시	1	5	5,100	1,530	3,570
계룡시	-		-	-	-
당진시	3	30	15,300	4,590	10,710
금산군	6	40	30,600	9,180	21,420
부여군	4 (2)	30	44,400	13,320	31,080
서천군	2	15	10,200	3,060	7,140
청양군	8 (1)	51	64,800	19,440	45,360
홍성군	-		-	-	-
예산군	2	10	10,200	3,060	7,140
태안군	1	10	5,100	1,530	3,570

※ ( ) 안은 2016년 신규 설치 개소수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601명	1,914,588	478,647	1,435,941
2016년	2,601명	1,914,588	478,647	1,435,941
증 감	-	-	-	-

※ 재원율 : 도비 25%, 시군비 75%

## ■ 사업개요

- 사업량 : 2,601명
- 내 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60세 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한 노인에게 식사배달
- 지원단가/제공횟수: 1인 1식 3,000원 / 주2~3회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 그 이외 실비징수 가능
- 추진기관 : 64개소(노인복지관, 부녀회,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 추진
- 급식내용 : 밥, 국, 밑반찬, 죽 등(노인육구 고려 다양하게 제공)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1일 평균 2,601명 1,914,588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도내 결식우려 저소득노인에게 식사배달서비스 제공으로 노인건강 증진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고(%)	도비(25%)	시군비(75%)
합계	2,601	1,914,588	-	478,647	1,435,941
천안시	320	235,713	-	58,928	176,785
공주시	206	151,800	-	37,950	113,850
보령시	157	115,500	-	28,875	86,625
아산시	289	212,851	-	53,213	159,638
서산시	230	169,125	-	42,281	126,844
논산시	214	157,575	-	39,394	118,181
계룡시	30	22,275	-	5,569	16,706
당진시	149	109,725	-	27,431	82,294
금산군	111	81,675	-	20,419	61,256
부여군	174	127,875	-	31,969	95,906
서천군	174	127,875	-	31,969	95,906
청양군	109	80,025	-	20,006	60,019
홍성군	149	109,725	-	27,431	82,294
예산군	170	125,400	-	31,350	94,050
태안군	119	87,449	-	21,862	65,587

# 무료경로식당 운영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4,157명	925,312	231,328	693,984
2016년	4,157명	925,312	231,328	693,984
증 감	-	-	-	-

※ 재원율 : 도비 25%, 시군비 75%

## ■ 사업개요

- 사업량 : 4,157명
- 내 용 :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급식 제공
- 지원단가/제공횟수: 1인 1식 3,000원 / 주2~3회 지원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 그 이외 실비징수 가능
- 위탁기관 : 54개소(노인복지관, 부녀회, 적십자봉사단 등)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1일 평균 4,157명, 925,312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결식우려노인 급식을 위한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노인 건강 도모

**참고**

**2016년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예정 현황**

시군명	사업량	사 업 비			
		계(100%)	국고(%)	도비(25%)	시군비(75%)
합계	4,157	925,312	-	231,328	693,984
천안시	609	135,561	-	33,891	101,670
공주시	310	69,000	-	17,250	51,750
보령시	259	57,751	-	14,438	43,313
아산시	384	85,500	-	21,375	64,125
서산시	340	75,750	-	18,938	56,812
논산시	354	78,750	-	19,688	59,062
계룡시	51	11,250	-	2,812	8,438
당진시	334	74,250	-	18,562	55,688
금산군	182	40,500	-	10,125	30,375
부여군	266	59,250	-	14,812	44,438
서천군	222	49,500	-	12,375	37,125
청양군	138	30,750	-	7,688	23,062
홍성군	253	56,250	-	14,062	42,188
예산군	266	59,250	-	14,812	44,438
태안군	189	42,000	-	10,500	31,500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925명	15,528,363	4,658,509	10,869,854
2016년	1,925명	15,702,704	4,710,811	10,991,893
총 감	-	174,341	52,302	122,039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대 상 : 시설입소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 지 원 : 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비(시설보수 및 침구·가재도구 등)
- 지원기준 : 기초수급자 전액지원, 기타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7.5%) 제외한 금액의 20%지원

※ 1등급 1,185천원/ 2등급 1,044천원/ 3등급 964천원/ 4등급 903천원/ 5등급 766천원

- 내 용 :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

### ○ 산출기초

- 재가시설급여자 1,925명(월평균 추정) × 766천원 × 12월 ≒ 15,702,704천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재가시설급여자 1,925명(추정) 15,702,704천원 지원(1회 추경 반영)
- (향후계획) 재가시설급여자 1,925명(추정) 15,702,704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법정 지자체 부담금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요양서비스 증진

(단위 : 명, 원)

시군별	월평균지급인원 (추정)		재원별 금액		
	인원수	비율	합계	도비(30%)	시군비(70%)
합계	1,925	100	15,702,704	4,710,811	10,991,893
천안시	273	14.2	2,229,784	668,935	1,560,849
공주시	144	7.5	1,177,703	353,311	824,392
보령시	187	9.7	1,523,162	456,949	1,066,213
아산시	139	7.2	1,130,595	339,178	791,417
서산시	146	7.6	1,193,406	358,022	835,384
논산시	204	10.6	1,664,487	499,346	1,165,141
계룡시	12	0.6	94,216	28,265	65,951
당진시	110	5.7	895,054	268,516	626,538
금산군	58	3.0	471,081	141,324	329,757
부여군	115	6.0	942,162	282,649	659,513
서천군	131	6.8	1,067,784	320,335	747,449
청양군	58	3.0	471,081	141,324	329,757
홍성군	146	7.6	1,193,406	358,022	835,384
예산군	100	5.2	816,540	244,962	571,578
태안군	102	5.3	832,243	249,673	582,570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 0 1 5 년	23개소	2,300,000	690,000	1,610,000
2 0 1 6 년	24개소	3,240,000	972,000	2,268,000
증 감	1개소	940,000	282,000	658,000-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대 상 : '08. 7. 1 이전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
- 지 원 : 생활상담·교육, 후원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주거환경 개선 등
- 지원기준 : '08. 7월 이전부터 지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舊 가정봉사원과건강센터)
  - ※ 시설별 관리대상 : 80명 이상/ 시설별 90~135백만원 차등 지원
- 내 용 :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
- 산출기초
  - 24개 시설 × 135,000천원 = 3,240,000천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23개 시설 2,300,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24개 시설 3,240,0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08. 7. 1 이전에 재가서비스를 받았던 기초수급자 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들,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단위 : 천원)

시군명	시 설 명	재원별 금액		
		합계	도비(30%)	시군비(70%)
시군계	24개 시설	3,240,000	972,000	2,268,000
천안시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부설 천안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신창가정봉사원파견센터	135,000	40,500	94,500
	성환재가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느티나무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천안시아우내은빛복지관 방문요양센터	135,000	40,500	94,500
공주시	공주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도덕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보령시	보령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아산시	성공회은혜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아산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온양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한울타리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서산시	서산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논산시	죽림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금산군	심광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부여군	부여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동산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서천군	서천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청양군	청양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정산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홍성군	청로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올리브재가노인종합지원센터	135,000	40,500	94,500
예산군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부설 노인복지센터	135,000	40,500	94,500
당진시	솔뫼베네딕도회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35,000	40,500	94,500

# 재가어르신 실버축제 한마당 대회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회	15,000	15,000	-
2016년	1회	13,500	13,500	-
증 감	-	△1,500	△1,50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대 상 : 재가 어르신 및 종사자 900여명
- 내 용 : 재가 어르신 및 종사자 화합의 장 마련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어르신의 문화욕구 충족
- 보조사업자 : 충남재가노인복지협회

### < 충남재가노인복지협회 현황 >

회 장 : 김영운(논산 죽림노인복지센터 대표)

회원기관 : 27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

기 능 : 재가노인복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시설간 상호협력 증진

## □ 2015 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2015. 9. 16/ 도청 문예회관/ 900여명 : 도비 15,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재가어르신 실버축제 한마당 대회 1회 : 13,5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재가 어르신 및 종사자 화합의 장 마련으로 네트워크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상

#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5,596개소	10,710,850	10,710,850	2,648,464	2,648,464	5,413,922
2016년	5,596개소	10,761,364	10,761,364	2,690,341	2,690,341	5,380,682
증 감	-	50,514	50,514	41,877	41,877	△33,240

※ 재원율 : 국비 25%, 도비 25%,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량 : 5,596개소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
- 지원기준
  - 난방비 : 개소당 연 1,500천원(월 300천원× 5개월 지원)
  - 양곡구입비 : 동지역 6포, 읍면지역 7포(282천원 ~ 329천원)
  - 경로당냉난방비 : 개소당 연 100천원(월 5만원 × 2개월)
- 산출기초 : 10,761,364천원
  - 난방비 : 1,500,000원×5,596개소=8,394,000천원
  - 냉방비 : 100,000원×5,596개소=559,600천원
  - 양곡비 : 1,807,764천원
  - 개소당 동지역(6포 282,660원 x 805개소 = 227,541천원)
  - 읍면지역(7포 329,770원 x 4,791개소 = 1,579,928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경로당 난방비 등 10,710,850천원 지원
- (향후계획)경로당 난방비 등 10,761,364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 계상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 산 액			
		계(100%)	국고(25%)	도 비(25%)	시군비(25%)
합계	5,596	10,761,364	2,690,341	2,690,341	5,380,682
천안시	688	1,315,289	328,823	328,823	657,643
공주시	410	786,657	196,665	196,665	393,327
보령시	390	747,212	186,803	186,803	373,606
아산시	510	978,885	244,722	244,722	489,441
서산시	372	713,512	178,378	178,378	356,756
논산시	510	981,429	245,357	245,357	490,715
계룡시	35	67,262	16,815	16,815	33,632
당진시	321	616,740	154,185	154,185	308,370
금산군	323	623,332	155,833	155,833	311,666
부여군	457	881,928	220,482	220,482	440,964
서천군	326	629,122	157,280	157,280	314,562
청양군	303	584,736	146,184	146,184	292,368
홍성군	363	700,525	175,131	175,131	350,263
예산군	362	698,595	174,648	174,648	349,299
태안군	226	436,140	109,035	109,035	218,070

# 노인지도자 양성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5,570명	55,700	16,710	38,990
2016년	5,596명	55,960	16,788	39,172
증 감	26명	260	78	182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사업량 : 5,596명
- 사업내용 : 시군에 등록된 경로당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실시
- 산출근거 : 노인지도자 양성 교육(1인당 10천원)  
- 5,596명 × 10,000원 = 55,960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노인지도자 양성비 5,570명 : 55,700천원 지원
- (향후계획)노인지도자 양성비 5,596명 : 55,96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에 근거
- 시군 일선 경로당회장단에 대한 교육 등에 소요경비 지원 계상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5,596	55,960	16,788	39,172
천안시	688	6,880	2,064	4,816
공주시	410	4,100	1,230	2,870
보령시	390	3,900	1,170	2,730
아산시	510	5,100	1,530	3,570
서산시	372	3,720	1,116	2,604
논산시	510	5,100	1,530	3,570
계룡시	35	350	105	245
당진시	321	3,210	963	2,247
금산군	323	3,230	969	2,261
부여군	457	4,570	1,371	3,199
서천군	326	3,260	978	2,282
청양군	303	3,030	909	2,121
홍성군	363	3,630	1,089	2,541
예산군	362	3,620	1,086	2,534
태안군	226	2,260	678	1,582

## 모범경로당 선정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30개소	60,000	18,000	42,000
2016년	30개소	60,000	18,000	42,000
증 감	-	-	-	-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사업량 : 30개소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선정서 교부, 경로당 소요물품 등의 인센티브 지원
- 산출근거 :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 30개소 × 2,000천원 = 60,000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모범경로당 선정 인센티브 30개소 : 60,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모범경로당 선정 인센티브 30개소 : 60,0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에 근거
- 모범경로당 인센티브(물품구입)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계상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30	60,000	18,000	42,000
천안시	3	6,000	1,800	4,200
공주시	2	4,000	1,200	2,800
보령시	2	4,000	1,200	2,800
아산시	2	4,000	1,200	2,800
서산시	2	4,000	1,200	2,800
논산시	2	4,000	1,200	2,800
계룡시	1	2,000	600	1,400
당진시	2	4,000	1,200	2,800
금산군	2	4,000	1,200	2,800
부여군	2	4,000	1,200	2,800
서천군	2	4,000	1,200	2,800
청양군	2	4,000	1,200	2,800
홍성군	2	4,000	1,200	2,800
예산군	2	4,000	1,200	2,800
태안군	2	4,000	1,200	2,800

#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 0 1 5 년	5,570	557,000	167,100	389,900
2 0 1 6 년	5,596	559,600	167,880	391,720
증 감	26	2,600	780	1,820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사업량 : 5,596개소
- 사업내용 : 노인들에게 적합한 건강, 취미, 운동놀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경로당 이용 만족도 제고
  - 프로그램 전문강사 파견, 프로그램 정기적 진행 등
- 산출근거 : 프로그램 보급비 지원(강사료 등)
  - 5,596개소 × 100,000원 = 559,600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프로그램 보급 5,570개소 : 557,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프로그램 보급 5,596개소 : 559,6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에 근거
-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외래강사 강사료 지원 등 비용 계상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5,596	559,600	167,880	391,720
천안시	688	68,800	20,640	48,160
공주시	410	41,000	12,300	28,700
보령시	390	39,000	11,700	27,300
아산시	510	51,000	15,300	35,700
서산시	372	37,200	11,160	26,040
논산시	510	51,000	15,300	35,700
계룡시	35	3,500	1,050	2,450
당진시	321	32,100	9,630	22,470
금산군	323	32,300	9,690	22,610
부여군	457	45,700	13,710	31,990
서천군	326	32,600	9,780	22,820
청양군	303	30,300	9,090	21,210
홍성군	363	36,300	10,890	25,410
예산군	362	36,200	10,860	25,340
태안군	226	22,600	6,780	15,820

#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보급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 0 1 5 년	800	160,000	48,000	112,000
2 0 1 6 년	800	160,000	48,000	112,000
증 감	-	-	-	-

※ 재원율 : 도비 30% 군비 70%

## □ 사업개요

- 사업량 : 800개소
- 사업내용 : 노인의 건강,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실시 할 수 있는 교육도구 보급
- 산출근거 : 프로그램 기자재구입  
- 800개소 × 200,000원 = 160,000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 800개소 : 160,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노인여가 프로그램 교구 800개소 : 160,0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45조에 근거
-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의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 비용 계상

## 2016년 노인 여가프로그램 지원 예정 현황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800	160,000	48,000	112,000
천안시	98	19,600	5,880	13,720
공주시	59	11,800	3,540	8,260
보령시	55	11,000	3,300	7,700
아산시	74	14,800	4,440	10,360
서산시	54	10,800	3,240	7,560
논산시	71	14,200	4,260	9,940
계룡시	5	1,000	300	700
당진시	46	9,200	2,760	6,440
금산군	45	9,000	2,700	6,300
부여군	66	13,200	3,960	9,240
서천군	46	9,200	2,760	6,440
청양군	44	8,800	2,640	6,160
홍성군	52	10,400	3,120	7,280
예산군	52	10,400	3,120	7,280
태안군	33	6,600	1,980	4,620

# 경로당프로그램관리사 운영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7명	838,296	251,488	586,808
2016년	27명	1,019,580	305,874	713,706
증 감	-	181,284	54,386	126,898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사업량 : 27명
  - 천안 3, 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금산부여홍성예산 2, 계룡서천청양태안 1
- 사업내용 :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서비스 관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역할)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조사, 노인의 욕구분석 및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지원계획 및 시행, 프로그램의 타 기관 연계 운용 등
- 산출근거 : 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 활동비, 4대 보험료 등
  - 37,762천원 × 27명 = 1,019,580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7명 : 838,296천원 지원
- (향후계획)프로그램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7명 : 1,019,58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에 근거
- 경로당 이용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27명분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계상

## 2016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예정 현황

(단위:천원, 명)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27	1,019,580	305,874	713,706
천안시	3	111,664	33,499	78,165
공주시	2	74,877	22,463	52,414
보령시	2	74,574	22,372	52,202
아산시	2	80,565	24,169	56,396
서산시	2	77,865	23,359	54,506
논산시	2	77,152	23,146	54,006
계룡시	1	37,439	11,232	26,207
당진시	1	75,241	22,572	52,669
금산군	2	75,241	22,527	52,669
부여군	2	76,910	23,073	53,837
서천군	2	33,253	9,976	23,277
청양군	1	39,653	11,896	27,757
홍성군	2	77,865	23,360	54,506
예산군	2	69,842	20,953	48,889
태안군	1	37,439	11,232	26,207

# 노년시대 신문보급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5,575명	278,500	41,775	236,725
2016년	5,596명	335,760	50,364	285,396
증 감	21명	56,000	8,400	47,600

※ 재원율 : 도비 15%, 시군비 85%

## □ 사업개요

- 사업량 : 5,596개소
- 사업내용 : 도 노인의 사회·경제 등에 대한 관심과 노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백세시대' 신문보급
- 산출근거 : 주 1회 발행, 1개소/연6만원 지원  
- 5,596개소 × 60,000원 = 335,760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노인신문 보급 5,575개소 : 278,5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노인신문 보급 5,596개소 : 335,76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에 근거
- 경로당별 노년신문보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계상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5,596	335,760	50,364	285,396
천안시	688	41,280	6,192	35,088
공주시	410	24,600	3,690	20,910
보령시	390	23,400	3,510	19,890
아산시	510	30,600	4,590	26,010
서산시	372	22,320	3,348	18,972
논산시	510	30,600	4,590	26,010
계룡시	35	2,100	315	1,785
당진시	321	19,260	2,889	16,371
금산군	323	19,380	2,907	16,473
부여군	457	27,420	4,113	23,307
서천군	326	19,560	2,934	16,626
청양군	303	18,180	2,727	15,453
홍성군	363	21,780	3,267	18,513
예산군	362	21,720	3,258	18,462
태안군	226	13,560	2,034	11,526

# 경로당신증축 및 기능보강[현안]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8	7,515,020	2,254,500	5,260,520
2016년	156	9,842,790	3,090,200	6,752,590
증 감	△52	2,327,770	835,700	1,492,070

※ 재원율 : 도비 30%, 시군비 70%

## □ 사업개요

- 사업량 : 156개소(신·증축 23개소, 기능보강 133개소)
- 사업내용 : 노후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시설보강(개보수 등) 등이 필요한 경로당
- 지원금액 :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비 : 총 9,842,790천원  
- 경로당 신·증축(3,090,200천원), 경로당 기능보강(6,752,590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비 : 208개소 7,515,020천원 지원
- (향후계획)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비 158개소 9,842,79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에 근거
- 신·증축 및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참고 1**

**2016년 경로당 신·증축 지원 예정 현황**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23	4,216,330	1,388,500	2,797,830
유보액			185,000	185,000	
천안시	김종문 의원	4	750,000	225,000	525,000
	이진환 의원				
	홍성현 의원				
공주시	윤석우 의원	7	1,253,000	379,000	874,000
	”				
	”				
	”				
	조길행 의원				
	”				
보령시	신재원 의원	2	450,000	135,000	315,000
	김태흠국회의원				
당진시	김동완국회의원	1	320,000	96,000	224,000
부여군	강용일 의원	1	365,000	109,500	255,500
	장기승 의원				
서천군	서형달 의원	3	280,000	84,000	196,000
	나소열전군수				
홍성군	오배근 의원	2	83,330	25,000	58,330
	”				
예산군	김기영 의원	1	200,000	60,000	140,000
태안군	유익환 의원	2	300,000	90,000	210,000
	정광섭 의원				

**참고 2**

**2016년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예정 현황**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의원)	135	5,422,592	1,701,700	3,720,892	
유보액		138,600	138,600		
천안시	김문규 의원	54	1,805,132	518,000	1,287,132
	김 연 의원				
	"				
	이진환 의원				
	홍성현 의원				
공주시	윤석우 의원	3	374,000	112,200	261,800
	"				
	"				
아산시	김응규 의원	4	250,000	75,000	175,000
	"				
	"				
서산시	-	-	-	-	-
논산시	김 연 의원	3	139,000	42,900	96,100
	전낙운 의원				
	"				
계룡시	김원태 의원	1	100,000	30,000	70,000
당진시	김 연 의원	7	230,000	69,000	161,000
	이용호 의원				
	정정희 의원				
금산군	김석곤 의원	15	350,000	105,000	245,000
	"				
부여군	김 연 의원	6	590,000	177,000	413,000
	유찬종 의원				
	"				
청양군	조치연 의원	10	200,000	60,000	140,000
	김홍열 의원				
홍성군	오배근 의원	8	625,860	188,000	437,860
	"				
	"				
	"				
	"				
예산군	김명선 의원	8	300,000	90,000	210,000
	김용필 의원				
	"				
태안군	유익환 의원	16	320,000	96,000	224,000
	홍재표 의원				

# 어르신 자서전 제작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5개소	50,000	15,000	35,000
2016년	15개소	60,000	30,000	30,000
증 감	0	10,000	15,000	5,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어르신들이 삶을 기술한 자서전(회고록) 발간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서전 제작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총사업비 : 60,000천원(도비30,000, 시군비 30,000)
  -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사업규모 : 15개 시군
- 산출기초
  - 4,000천원 × 15개 시군 = 60,000천원
- 제작방법
  - 발생부수 : 시군당 100부 / 300페이지 정도
  - 공모를 통하여 참여자 결정

## ■ 2015. 추진실적

- 제작완료 : 4개 시군    ○ 교정및편집중 : 6개 시군    ○ 원고정리 중 : 5개 시군
- ※ 전 시군 금년내 완료(발간) 목표로 추진

## ■ 계상이유 : 사업비 증 15,000천원 (도)

-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여 남은 인생에 활력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후손들에게 삶의 지혜 및 인생지침서로 활용

**참고**

어르신 자서전 운영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계	시군비	시군비	비 고
계	15개소	60,000	30,000	30,000	
천안시	1	4,000	2,000	2,000	
공주시	1	4,000	2,000	2,000	
보령시	1	4,000	2,000	2,000	
아산시	1	4,000	2,000	2,000	
서산시	1	4,000	2,000	2,000	
논산시	1	4,000	2,000	2,000	
계룡시	1	4,000	2,000	2,000	
당진시	1	4,000	2,000	2,000	
금산군	1	4,000	2,000	2,000	
부여군	1	4,000	2,000	2,000	
서천군	1	4,000	2,000	2,000	
청양군	1	4,000	2,000	2,000	
홍성군	1	4,000	2,000	2,000	
예산군	1	4,000	2,000	2,000	
태안군	1	4,000	2,000	2,000	

##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대축제

### ■ 예산현황 : 15년)사회단체보조금 →16년) 일반회계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회	-	-	-
2016년	1회	7,200	7,200	-
증 감	-	7,200	7,20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
- 대 상 :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15개소 이용 어르신
- 주 관 :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충남지회
- 내 용 :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화합의 장 마련  
- 스포츠댄스, 악기공연 발표회 및 유공자 표창 등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제2회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대축제 개최  
-일시: 2015. 10. 22. -장소:도청문예회관 -참가인원:어르신 500명
- (향후계획) '16. 10월 중 노인복지관 어르신대축제 개최(장소 미정)

### ■ 계상이유

- 노인복지관에서 배운 예체능 프로그램 발표를 함으로써 참여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 및 종사자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사기진작
- 노인복지관 종사자 및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한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 경비 지원

# 경로당광역센터 운영비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1개소	281,250	281,250	140,625	140,625	-
2016년	1개소	331,250	331,250	165,625	165,625	-
증 감	-	50,000	50,000	25,000	25,000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5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근무인원 : 4명(센터장1, 과장1, 대리1, 회계1)

※ 주요사업내용

- 욕구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 경로당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발굴·보급
-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신고·지도
- 노후생활대비 통합교육 강사 간담회 개최 및 운영

- 산출내역 : 인건비 및 운영비(164,250천원), 사업비(167,000천원) : 331,250천원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281,250천원 지원
- (향후계획)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331,25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5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계상

**참고**

**시군별 경로당 현황**

(기준일 : '15.6.30, 단위 : 개소, 명)

시군명	분회수	경로당수	총회원수	이용인원	1일 이용인원
계	208	5,596	218,490	93,985	16.8
천안시	30	688	23,963	11,328	16.5
공주시	16	410	16,253	7,457	18.2
보령시	16	390	15,720	6,384	16.4
아산시	17	510	19,116	6,161	12.1
서산시	15	372	15,983	5,055	13.6
논산시	15	510	20,630	8,041	15.8
계룡시	3	35	1,372	421	12.0
당진시	15	321	17,595	8,060	25.1
금산군	10	323	10,438	6,018	18.1
부여군	16	457	16,956	7,482	16.4
서천군	13	326	11,313	5,387	16.8
청양군	10	303	7,842	6,294	20.9
홍성군	11	363	14,423	6,204	17.1
예산군	13	362	16,500	6,119	17.0
태안군	8	226	10,386	3,574	15.7

#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80개소	1,123,200	280,800	842,400
2016년	185개소	1,154,400	557,200	557,200
증 감	5개소	31,200	276,400	△285,2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량 : 185개소

※ 5개소 신규조성(보령1, 아산1, 금산1, 홍성1, 예산군1)

○ 사업내용 : 행복경로당 설치·운영에 따라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및 이용노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무료경로식당 운영

○ 산출근거 : 연 52일(주 1회), 개소당 40명, 1식 3,000원

- 185개소×3,000원×40명×52일 = 1,154,400천원

## □ 2015 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180개소 : 1,123,2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185개소 : 1,154,4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

○ 185개소 행복경로당 이용노인을 위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예산 계상

##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지원 예정 현황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185개소	1,154,400	577,200	577,200
천안시	24	149,760	74,880	74,880
공주시	4	24,960	12,480	12,480
보령시	21	131,040	65,520	65,520
아산시	18	112,320	56,160	56,160
서산시	15	93,600	46,800	46,800
논산시	15	93,600	46,800	46,800
계룡시	2	12,480	6,240	6,240
당진시	3	18,720	9,360	9,360
금산군	13	81,120	40,560	40,560
부여군	12	74,880	37,440	37,440
서천군	13	81,120	40,560	40,560
청양군	10	62,400	31,200	31,200
홍성군	13	81,120	40,560	40,560
예산군	13	81,120	40,560	40,560
태안군	9	56,160	28,080	28,080

#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80개소	1,080,000	324,000	756,000
2016년	185개소	1,110,000	555,000	555,000
증 감	5개소	30,000	231,000	△201,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량 : 185개소

※ 5개소 신규조성(보령1, 아산1, 금산1, 홍성1, 예산군1)

○ 사업내용 :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제반비용  
(외부강사비용, 건강교실,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 발굴 등)

○ 산출근거 : 6,000천원/개소당

- 6,000천원×185개소 = 1,110,000천원

## □ 2015 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프로그램 운영 180개소 : 1,080,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프로그램 운영 185개소 : 1,110,0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

○ 185개소 거점 행복경로당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반비용 예산계상

**참고**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 예정 현황**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185개소	1,110,000	555,000	555,000
천안시	24	144,000	72,000	72,000
공주시	4	24,000	12,000	12,000
보령시	21	126,000	63,000	63,000
아산시	18	108,000	54,000	54,000
서산시	15	90,000	45,000	45,000
논산시	15	90,000	45,000	45,000
계룡시	2	12,000	6,000	6,000
당진시	3	18,000	9,000	9,000
금산군	13	78,000	39,000	39,000
부여군	12	72,000	36,000	36,000
서천군	13	78,000	39,000	39,000
청양군	10	60,000	30,000	30,000
홍성군	13	78,000	39,000	39,000
예산군	13	78,000	39,000	39,000
태안군	9	54,000	27,000	27,000

#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5개소	5,000	1,500	3,500
2016년	5개소	5,000	2,500	2,500
증 감	-	-	1,000	1,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량 : 5개소
  - ※ 5개소 신규조성(보령1, 아산2, 금산1, 홍성1, 예산1)
- 사업내용 : 경로당의 정보화 교육 등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컴퓨터 지원
- 산출근거 : 1,000천원/ 개소당
  - 1,000천원×5개소 = 5,000천원

## □ 2015 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행복경로당 컴퓨터 5개소 : 5,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행복경로당 컴퓨터 신규 5개소 : 5,0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
- 5개소 거점 행복경로당의 컴퓨터 보급비 예산 계상

**참고**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 예정 현황**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5개소	5,000	25,000	25,000
천안시	-	-	-	-
공주시	-	-	-	-
보령시	1	1,000	500	500
아산시	1	1,000	500	500
서산시	-	-	-	-
논산시	-	-	-	-
계룡시	-	-	-	-
당진시	-	-	-	-
금산군	1	1,000	500	500
부여군	-	-	-	-
서천군	-	-	-	-
청양군	-	-	-	-
홍성군	1	1,000	500	500
예산군	1	1,000	500	500
태안군	-	-	-	-

# 행복경로당 증개축[공약]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5개소	250,000	75,000	175,000
2016년	5개소	250,000	125,000	125,000
증 감	-	-	50,000	△50,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사업량 : 5개소

※ 5개소 신규조성(보령1, 당진3, 예산1)

○ 사업내용 :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진료공간, 회의실 등 활용을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

○ 산출근거 : 50,000천원/ 개소당

- 50,000천원×5개소 = 250,000천원

## □ 2015 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행복경로당 증개축 5개소 : 250,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행복경로당 증개축 신규 5개소 : 5개소 250,0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5조

○ 5개소의 행복경로당 조성을 위한 증개축비 예산계상

**참고**

**행복경로당 증개축 지원 예정 현황**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5개소	250,000	125,000	125,000
천안시	-	-	-	-
공주시	-	-	-	-
보령시	1	50,000	25,000	25,000
아산시	1	50,000	25,000	25,000
서산시	-	-	-	-
논산시	-	-	-	-
계룡시	-	-	-	-
당진시	-	-	-	-
금산군	1	50,000	25,000	25,000
부여군	-	-	-	-
서천군	-	-	-	-
청양군	-	-	-	-
홍성군	1	50,000	25,000	25,000
예산군	1	50,000	25,000	25,000
태안군	-	-	-	-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역사문화체험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3개 시군	30,000	15,000	15,000
2016년	3개 시군	30,000	15,000	15,000
증 감	-	-	-	-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대 상 :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총 285명(천안 90명, 아산 90명, 서천 105명)
- 사업목적 : 지역명소 방문 및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의 사회문화 이해로 고국에서의 이질감 해소
- 내 용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에게 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및 각종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 산출기초 : 10,000천원×3개 시군=30,000천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사업)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사할린 한인 거주지 3개 시·군에 5,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사할린 한인 거주지 3개 시·군에 5,000천원 지원 예정

## ■ 계상이유

-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이주생활에 대한 외로움·불편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역사문화체험을 통한 지역 사회문화 이해 및 유대감 형성
- 고국에서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민족정체성 확립,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한국에서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개소	100,000	100,000	
2016년	1개소	119,510	119,510	
증 감		19,510	19,51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및 근무자 인건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년
- 사업량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
- 산출기초 : 인건비(67,060천원), 운영비(30,000천원), 사업비(22,450천원)
  - ┌인건비(2명) : 기본급(34,000), 상여금(11,300), 교통비 및 급식비 등(16,560), 퇴직적립금(5,200)
  - └운영비 : 여비(6,000), 공공요금(8,000), 수용비(3,500), 보험료(2,500), 업무추진비(3,500)
  - └차량유지관리비(5,100), 기타운영비(1,400)
  - └사업비 : 각종 회의 및 교육비, 간담회 등(22,450)
- 주요사업 : 노인지도자연수, 실버종합예술제, 자원봉사클럽경진대회,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 지원근거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 2015년 추진실적

- 노인지도자연수(5,800명),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대회(650명), 실버종합예술제(750명), 자원봉사클럽경진대회(350명)

## ■ 계상이유

- 노인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및 사업비
- ※ 참고자료 : 2016년 노인회예산지원 현황

가. 일반현황

설치일	연합회장	소재지	직원	조직	회원수
'69.09.24	송태진 (36.08.10)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20-1	11명	지회15, 분회208, 경로당5,575	217,952

나. 예산지원현황

예산구분	사 업 내 용	2014년	2015년	2016년
<b>합 계</b>		<b>214,000</b>	<b>235,800</b>	<b>234,155</b>
일반회계	<b>소 계</b>	<b>150,500</b>	<b>166,500</b>	<b>199,155</b>
	• 도연합회 운영비(임차료 포함)	90,000	100,000	119,510
	•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5,000	5,000	4,750
	• 실버 종합예술대회	16,000	16,000	14,400
	•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15,000	15,000	13,500
	• 노인지도자 워크숍	12,000	12,000	-
	• 대한노인회종사자 처우개선	-	6,000	11,400
	•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출전비	12,500	12,500	11,250
	• 자원봉사 클럽경진대회			11,700
	• 그라운드 골프대회			7,020
	• 충남노인회관 개관행사			5,625
노인복지 기 금	<b>소 계</b>	<b>42,000</b>	<b>42,000</b>	<b>35,000</b>
	• 게이트볼 대회	9,000	9,000	14,000
	• 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7,000	7,000	-
	• 노인회 각종 회의.행사 지원	6,000	6,000	6,000
	•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20,000	20,000	15,000
사회단체 보 조 금	<b>소 계</b>	<b>21,500</b>	<b>27,300</b>	
	• 도연합회사무실 운영	15,000	19,500	-
	• 그라운드 골프대회	6,500	7,800	-

#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 종사자 처우개선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16년	10명	11,400	11,400	
증 감	10명	11,400	11,40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지원배경 : 열악한 보수체제로 사무처 직원의 잦은 이동, 유사기관인 노인복지관은 처우개선비(월 9~15만원)지원하고 있으나 처우개선비 미지원으로 사기저하
- 지원대상 : 10명(총무부 3, 취업지원센터 2, 경로당광역지원센터 5)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산출기초 : 10명×월10만원×12개월

## ■ 2015년 추진실적

- '15.7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 ■ 계상이유 : 노인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 열악한 보수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아 업무의 연속추진이 어려움
  - 노인복지관 직원들은 처우개선비(월9~15만원)를 지급받고 있음
- 사무처 직원의 사기저하 예방하기 위해 계상

<질 문>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종사자 처우개선비 계상 이유는?

■ 현 황

- (직원현황) 11명(노인회사무처 3, 취업지원센터 2, 자원봉사센터 1, 경로당광역지원센터 5)
- (근무연수) 평균 4.9년
- (급여수준) 월 평균 2,037백만원(교통비, 급식비 등 제수당 포함)

■ 문 제 점

- 노인회 사무처 직원, 호봉제 미적용으로 큰 폭의 운영비 증액이 없을 경우 보수 동결로 노인복지관 등 유사기관 종사자에 비해 낮은 수준  
 ※ 운영비 지원현황 : '13년(86백만원), '14년(90백만원), '15년(100백만원)

- 실제, 노인회 총무부장(20년 4개월 근무, 21호봉 )의 월평균 급여는 1,986천 원인 반면, 노인복지관 부장급 21호봉은 3,662천원 수준으로 1,676천원 차이발생

※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근무연수에 따라 9~15만원 처우개선비 지급

[참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구 분	노인회		노인복지관					
	총무부장	사무처장	관장	부장	과장	선임 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사무직
21 호봉 기준	1,986	2,117	4,018	3,662	3,330	3,037	2,793	2,732
최 소 승진연수	-	-	-	-	만7년 이상	만5년 이상	-	

- 특히, 대한노인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구 분	대한노인회가이드라인 (제수당 미포함)	도 연합회급여수준 (제수당 포함)	차액
사무처장	최하 2,500천원	2,117천원	383천원
총무부장	최하 2,000천원	1,986천원	140천원

# 참고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종사자 보수현황

구분	직위	임용일	근무 연수	호봉	2015년도월보수액							
					계	기본급	제수당					
							소계	교통비	급식비	체력 단련비	직책 수당	
			평균 4.9월		평균 2,037,056							
사무 처	사무 처장	15. 1. 1	0.3	미적용	2,117,000	1,507,000	610,000	230,000	230,000	150,000		
	총무 부장	94.12. 9	20.3	미적용	1,986,000	1,376,000	610,000	230,000	230,000	150,000		
경로 당 광역 지원 센터	센터장	13. 2.15	2.3	3호봉	2,467,000	2,067,000	400,000	100,000	100,000		200,000	
	팀장	13. 2. 8	2.3	2호봉	2,083,000	1,783,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팀원	"	2.3	2호봉	1,897,000	1,697,000	200,000	100,000	100,000			
	회계	"	2.3	2호봉	1,829,000	1,692,000	200,000	100,000	100,000			
자원 봉사 센터	부장	11. 3. 1	4		2,216,000	2,006,000	210,000	50,000	100,000		60,000	
취업 지원 센터	센터장	05.12. 1	9.3		1,959,000	1,909,000	50,000		50,000			
	부장	14. 3. 1	1		1,779,500	1,729,500	50,000		50,000			

#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6,500명	15,000	15,000	
2016년	6,500명	13,500	13,500	
증 감		△1,500	△1,50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시·군 지회단위 순회교육(15개 시군 6,500명)
  - 국가 및 도정 노인시책, 노인복지 증진방안, 모범노인 표창 등
- 사업량 : 15개 시·군 노인회 순회교육(6,500여명)
- 산출기초
  - 교재비 : 4,500천원
  - 시군지회 교육비 보조 : 5,500천원
  - 표창비(30여명) : 3,000천원
  - 여비 및 부대비 : 2,000천원
- 지원근거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 2015년 추진실적

- 시군 지회장, 읍면동분회장, 경로당회장 6,500여명 노인시책 교육

## ■ 계상이유

- 경로당 회장 등 노인지도자 교육 등에 소요되는 강사비 및 교재비 등으로 노인지도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계상

#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출전비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식	12,500	12,500	
2016년	1식	<b>11,250</b>	<b>11,250</b>	
총 감		△1,250	△1,25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복지부 주관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출전에 따른 피복비, 차량비, 숙박비 등 제반비용
- 사업량 : 90명
- 주요종목 : 축구, 한궁,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 ※ 참가자는 도 연합회 주관,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대회(5월경), 실버종합예술제(10월경)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출전
- 산출기초 : 선수복(4,750천원), 차량비(3,000천원), 식비 및 숙박(3,500천원)

## ■ 2015년 추진실적

-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출전
  - 충북제천(6.15) / 게이트볼 등 4개종목 / 90여명 출전

## ■ 계상이유

- 전국노인 건강대축제 참가에 따른 소요비용

# 실버종합예술제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식	16,000	16,000	
2016년	1식	14,400	14,400	
증 감	0	△1,600	△1,60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래자랑, 장기·바둑, 한궁대회 개최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
  - 사업량 : 대회 1회 개최
    - 한궁, 장기·바둑, 노래자랑
  - 총사업비 : 14,400천원(도비14,400천원)
  - 산출기초
    - 시상금 : 4,800천원
    - 참가자 식비 : 3,900천원
    - 심사수당 : 1,800천원
    - 행사진행(악단 등) : 3,900천원
- ※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지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실버종합예술제 개최
  - 일시·장소 : 2015. 9. 22.(화)10:00~15:30 / 청양군문화예술회관
  - 내용 : 한궁, 장기·바둑, 노래자랑
  - 사업비 : 16,000천원
- 2016년 개최 시기·장소 미확정

## ■ 계상이유 : 사업비 감 1,600천원 (도비)

- 노인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 실현

#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 ■ 예산현황 : 15년)사회단체보조금 →16년) 일반회계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16년	1식	7,020	7,020	
증 감		7,020	7,020	

※ 재원율 : 도비 100%

✓ 15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세무회계과) 신청, 심사를 통해 지원하였으나 '16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폐지로 인해 일반회계 편성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00세시대, 노인인구 지속 증가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향상
- 사업내용 :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소요되는 피복, 식비, 심판수당 등 제반비용
- 사업량 : 1식, 500여명(선수 300, 심판 및 진행요원 70, 임직원 130)

게이트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세기 경 프랑스 남부 농민들이 양치기가 쓰는 끝이 굽은 막대기(크로케)로 공을 치는 파유마유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게이트볼로 고안</li> <li>▪ 우리나라에는 1982년경 일본인 관광객에 의해 첫선을 보였으며, 1983년 게이트볼협회 설치 이후 활성화</li> </ul>	
그라운드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3년 일본에서 시작, 한국은 10년 전에 들어옴</li> <li>▪ 경기방법은 골프채와 비슷한 나무채로 게이트볼처럼 공을 쳐서 직경 36cm홀에 넣는 것으로 잔디밭 등에 8홀을 기본으로 보통 6명이 팀을 구성</li> <li>▪ 게이트볼과 골프를 혼합한 경기</li> </ul>	

## ■ 2015년 추진실적

- 천안종합운동장(5.14) 개최 : 550여명 참석 ※우승, 준우승팀 전국대회출전

## ■ 계상사유

-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고취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회	7,000	7,000	-
2016년	1회	6,300	6,300	-
증 감	-	△700	△70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대 상 : 우수 노인자원봉사 어르신
- 주관/후원 :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대한노인회 /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지역내 왕성하게 활동하는 우수노인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매년 개최) 참가 경비 지원
- 지원내용 : 참가에 대한 교통비, 중식, 여행자 보험가입 등 지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일시: 2015. 11. 5~6. -장소:킨텍스 -참가인원:어르신 40명
- (향후계획) '16. 11월 중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 ■ 계상이유

-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가단체에 대한 교통비, 식비, 여행자 보험가입 등 소요경비 지원

# 노인자원봉사 클럽 경진대회

## ■ 예산현황 : 15년)노인복지기금 →16년) 일반회계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16년	1식	11,700	11,700	
증 감		11,700	11,700	

※ 재원율 : 도비 100%

15년까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였으나 저금리로 기금이 잠식되고 있어 '16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93년 조성하여 적립 이자액으로 게이트볼, 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등 4개사업(42백만원) 지원

✓ 당초대로 기금에서 지원할 경우 이자율이 최소 4.3%이상이 유지되어야 함.

※ 기금액 : '15.10월말) 993,670천원 , '14년말) 1,009,347천원, 15,677천원 ↓

→ 향후, 지속적인 저금리 시 기금사업 일반회계로 전환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00세시대, 자원봉사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클럽간 활동정보 공유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사업내용 : 노인자원봉사 클럽 활동 우수사례 발표, 활동사진 전시, 우수사례 책자 발간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 사업량 : 1식, 550명(봉사클럽회원 230명, 지회 및 분회장 220명)
- 주 관 :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회장 ; 송태진)
- 산출기초 : 식비(7,000천원), 심사수당(1,000천원), 사례집발간(1,550천원), 시상금(2,150천원)

## ■ 2015년 추진실적

- 청양문화예술회관(10.23) 개최 : 550여명 참석

## ■ 계상사유

- 자원봉사클럽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상

# 충청남도 노인회관 개관행사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식	0		
2016년	1식	5,625	5,625	
증 감		5,625	5,625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45여간의 대전시대를 접고, 충남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화합 및 도약을 위한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충청남도 노인회관 개관행사에 따른 제반비용 지원
- 사업량 : 1식('16. 1. 20) /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
- 산출기초 : 오찬 등 다과비 300명(4,500천원), 우편료 등 부대경비(1,750천원)

### 〈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현황 〉

- ◆ 소재지 : 대전시 서구 계룡로 640(새마을 도지회 사무실 임대사용)
- ◆ 조직 : 지회 15개소, 분회 208개소, 경로당 5,575개소  
 ※ 회장 : 송태진(36년생 / 금산출신 / 경찰공무원), 사무처장 : 김현규(전 복지보건국장)
- ◆ 회원 : 217,952명(전체노인 330,807명의 65.8%)
- ◆ 주요사업 : 노인지도자 연수, 취업지원센터 운영,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각종 게이트볼 등 체육행사 개최 등
- ◆ 예산현황 : 1,230백만원(국 830, 도 365, 노인회중앙 3, 자부담 32)  
 ※사무처 254, 취업지원센터 435, 경로당광역센터 281, 자원봉사센터 259)

## ■ 2015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노인회관 시공 완료(11.30), 도 연합회 이전(12.15)
- 공유재산심의위원회(12.22)심의결과, 무상사용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2층만 무상사용허가 → 1, 3층에 대한 활용계획수립 요구

## ■ 계상사유

- 노인회관 신축이전 개관에 따른 화합행사를 위해 계상

- ❖ '13.1.24 노인회장단과 지사님 간담회 시 내포신도시 내 단독 노인회관 건립 요청(송태진 도 연합회장) →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15. 3 ~ 12월(10개월)
- 위 치 :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916번지(1,040m<sup>2</sup>)
- 건축규모 : 연면적 1,558.3m<sup>2</sup>(지하 1층, 지상 3층)
- 사 업 비 : 4,449백만원(토지매입 577, 설계 150, 건축 등 3,722)
- 층별배치 계획

층별	연면적	용 도
<b>합계</b>	<b>1,558.35</b>	
지하1층	206.52m <sup>2</sup>	기계실, 전기실, 창고
1층	320.90m <sup>2</sup>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노인지도자대학
2층	586.28m <sup>2</sup>	노인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3층	444.65m <sup>2</sup>	대회의실, 다목적실

### ■ 추진경과

- '13. 4월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의결(261회 본회의)
- '13. 7월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
- '13.12월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예산 확보(727,600천원)
- '14. 2월 부지매입(570,816천원)
- '14.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4.12월 노인회관 건축비 예산 확보(3,722,000천원)
- '15. 3월 노인회관 공사 착공
- '15.12월 노인회관 준공

#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시설급여)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630명	21,614,402	10,807,201	10,807,201
2016년	1,701명	25,857,060	12,928,530	12,928,530
총 감	71명	4,242,658	2,121,329	2,121,329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대 상 : 시설입소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대상자)
- 지 원 : 운영비 및 인프라 구축비(시설보수 및 침구·가재도구 등)
- 지원기준 : 기초수급자 전액지원, 기타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10%)  
 ※ 1등급 1,682천원 / 2등급 1,561천원 / 3~5등급 1,439천원
- 내 용 :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
- 산출기초  
 - 의료시설급여자 1,701명(월평균 추정) × 1,439천원 × 12월 ≒ 25,857,060천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의료시설급여자 1,630명 23,554,058천원 지원 (1회 추경 반영)
- (향후계획) 의료시설급여자 1,701명 25,857,06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법정 지자체 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등급자(1~4급, 5급 치매특별등급) 지원

(단위 : 명, 원)

시군별	월평균지급인원 (추정)		재원별 금액		
	인원수	비율	합계	도비(50%)	시군비(50%)
합계	1,701	100	25,857,060,000	12,928,530,000	12,928,530,000
천안시	233	13.7	3,542,416,000	1,771,208,000	1,771,208,000
공주시	107	6.3	1,628,996,000	814,498,000	814,498,000
보령시	111	6.5	1,680,710,000	840,355,000	840,355,000
아산시	158	9.3	2,404,704,000	1,202,352,000	1,202,352,000
서산시	141	8.3	2,146,138,000	1,073,069,000	1,073,069,000
논산시	216	12.7	3,283,844,000	1,641,922,000	1,641,922,000
계룡시	26	1.5	387,856,000	193,928,000	193,928,000
당진시	109	6.4	1,654,852,000	827,426,000	827,426,000
금산군	54	3.2	827,426,000	413,713,000	413,713,000
부여군	129	7.6	1,965,136,000	982,568,000	982,568,000
서천군	112	6.6	1,706,566,000	853,283,000	853,283,000
청양군	44	2.6	672,284,000	336,142,000	336,142,000
홍성군	89	5.2	1,344,566,000	672,283,000	672,283,000
예산군	87	5.1	1,318,712,000	659,356,000	659,356,000
태안군	85	5	1,292,854,000	646,427,000	646,427,000

#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3개소	1,670,002	835,001	835,001
2016년	13개소	1,727,640	863,820	863,820
증 감		57,638	28,819	28,819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대 상 : 08. 7. 1.이전 기존 운영비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던 기초수급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1~4등급) 미판정 입소자 보호 비용 지원
- 지 원 : 노인의료시설 입소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
- 지원기준 : 시설별 장기요양 급여기준에 의거 지원
  - ※1일 요양수가 : 48,810원(노인요양시설 3등급 기준 적용)
  -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내 용 : 노인의료시설 입소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
- 산출기초
  - 78명(입소인원) × 1,464,300원(월 지급액) × 12개월 ≒ 1,370,610,000원
  - 요양수가 증가 및 긴급조치대상자 발생에 대한 유보액 357,030,000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도내 13개 시설 등급외자 74명(연인원 888)에게 1,670,002천원 지원
- (향후계획) 도내 13개 시설 등급외자 78명(연인원 936)에게 1,727,64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던 기초수급자 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2016년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지원

(단위 : 명, 원)

시군별	시설명	연인원	실인원	재원별 금액		
				합계	도비(50%)	시군비(50%)
합계	13개 시설	936	78	1,727,640,000	863,820,000	863,820,000
유보액				357,030,000	178,515,000	178,515,000
소계	13개시설	936	78	1,370,610,000	685,305,000	685,305,000
천안시	호서노인전문요양원	36	3	52,716,000	26,358,000	26,358,000
	천안노인전문요양원	24	2	35,144,000	17,572,000	17,572,000
	천안제일요양원	36	3	52,716,000	26,358,000	26,358,000
보령시	보령요양원	60	5	87,858,000	43,929,000	43,929,000
아산시	정애시니어빌	264	22	386,576,000	193,288,000	193,288,000
서산시	서산노인요양원	24	2	35,156,000	17,578,000	17,578,000
당진시	참사랑복지재단	48	4	70,288,000	35,144,000	35,144,000
	평안마을	204	17	298,718,000	149,359,000	149,359,000
금산군	인삼골건강마을	48	4	70,288,000	35,144,000	35,144,000
부여군	만수노인요양원	60	5	87,860,000	43,930,000	43,930,000
	건양노인요양원	36	3	52,716,000	26,358,000	26,358,000
서천군	금매복지원	12	1	17,572,000	8,786,000	8,786,000
홍성군	장수노인요양원	84	7	123,002,000	61,501,000	61,501,000

# 무료양로시설 운영지원(온양정애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1개소	450,167	355,632	315,117	40,515	94,535
2016년	1개소	475,126	375,350	332,588	42,762	99,776
증 감	-	24,959	19,718	17,471	2,247	5,241

※ 재원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 사업개요

- 대 상 : 온양정애원(도내 유일 무료양로원)
- 내 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양로시설 무료 입소 지원
- 지 급 액 : 소득인정 기준액별 차등지급(매월 25일 지급)
- 산출기초 : 종사자 인건비(급여, 4대보험 등) 440,122천원/ 운영비 35,004천원

- ※ 운영비 ① 관리운영비: 기초수급자 1인당 894천원/년간, 실비입소자 50%
- ② 프로그램사업비: 기초수급자 1인당 120천원/ 년간, 실비입소자 50%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인건비, 운영비 437,483천원 지원
- (향후계획) 인건비, 운영비 475,126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무료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입소자에 대한 보호 및 시설운영 유지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89개소	7,728,933	5,796,700	3,864,467	1,932,233	1,932,233
2016년	13개소	4,068,000	3,051,000	2,034,000	1,017,000	1,017,000
증 감	76개소	△3,660,933	△2,745,700	△1,830,467	△915,233	△915,233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 사업개요

- 대 상 : 사회복지법인 킹스빌리지 등 13개소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내 용 : 신축3, 증개축3, 개보수 3, 장비보강 4
- 지원단가

- ▷ 신축·증개축 : m<sup>2</sup>당/1,286천원
- ▷ 개보수 : m<sup>2</sup>당/655천원
- ▷ 장비보강 : 시설종류별 30,000천원 ~ 200,000천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197개소 214개사업 5,120,439천원 지원(1회 추경 반영)
- (향후계획) 13개소 13개사업 4,068,000천원 지원 계획

## ■ 계상이유

- 보건복지부 「2016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한 사업 신청 예산에 준하여 계상

(단위: 건, 천원)

시군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신 축	증 개 축	개 보 수	장비 보강	계 (100%)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합계	13	3	3	3	4	4,068,000	2,034,000	1,017,000	1,017,000
천안시	2	-	-	2	-	60,000	30,000	15,000	15,000
공주시	2	-	-	-	2	60,000	30,000	15,000	15,000
보령시	-	-	-	-	-	-	-	-	-
아산시	-	-	-	-	-	-	-	-	-
서산시	1	-	1	-	-	926,000	463,000	231,500	231,500
논산시	-	-	-	-	-	-	-	-	-
계룡시	-	-	-	-	-	-	-	-	-
당진시	-	-	-	-	-	-	-	-	-
금산군	-	-	-	-	-	-	-	-	-
부여군	-	-	-	-	-	-	-	-	-
서천군	1	1	-	-	-	200,000	100,000	50,000	50,000
청양군	1	1	-	-	-	200,000	100,000	50,000	50,000
홍성군	4	1	1	-	2	1,720,000	860,000	430,000	430,000
예산군	2	-	1	1	-	902,000	451,000	225,500	225,500
태안군	-	-	-	-	-	-	-	-	-

# 도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식	30,000	30,000	
2016년	1식	30,000	30,000	
증 감	-	-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대 상 : 충청남도립요양원
- 지 원 :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비(제초·전정 등 조경관리) 지원
- 내 용 :도립요양원 시설 부지내 조경관리 등 관리운영비 지원

### <시설 현황>

- 소재지 :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233번지 일원
- 수탁법인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 시설규모 : 연면적 5,110㎡(3동)/대지 89,438㎡/생활자 86명/종사자 52명
- 위탁기간 : 2015.11.25.~2018.11.24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시설부지 내 제초 및 조경관리 등 시설유지관리비 30,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시설부지 내 제초 및 조경관리 등 시설유지관리비 30,0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시설부지 내 제초 및 조경관리 등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비로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및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10조(운영비 지원 및 자체충당),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자체)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 0 1 5 년	3개소	<b>150,000</b>	<b>75,000</b>	<b>75,000</b>
2 0 1 6 년	3개소	<b>140,000</b>	<b>70,000</b>	<b>70,000</b>
증 감	-	<b>△10,000</b>	<b>△5,000</b>	<b>△5,000</b>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목 적 :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
- 사 업 량 : 3개소
- 총사업비 : 140,000천원(도비 70,000, 시군비 70,000)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 공주시(윤석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개소 / 140백만원(도 70, 시군 70)
  - (공주시랑 요양원 50,000천원 금강노인복지센터 50,000천원 다사랑요양원 40,000천원)

### ■ 계상이유

-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장비보강 지원

# 아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 0 1 5 년	-	-	-	-
2 0 1 6 년	1개소	<b>300,000</b>	<b>150,000</b>	<b>150,000</b>
증 감	1개소	300,000	150,000	150,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목 적 :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량 : 1개소(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 총사업비 : 300,000천원(도비 150,000, 시군비 150,000)
- 사업내용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노인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교체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산출기초 : 시설보수(리모델링) 282백만원, 노후장비교체 18백만원

## ■ 계상이유

- 노후화된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교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현안사업

# 계룡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 0 1 5 년	-	-	-	-
2 0 1 6 년	1개소	<b>100,000</b>	<b>50,000</b>	<b>50,000</b>
증 감	1개소	100,000	50,000	50,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목 적 :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량 : 1개소(계룡시노인복지관)
- 총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이용 증가에 따라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필요  
- 경로식당 확장 및 사무실 이전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 계상이유

- 노후화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복지관 환경 조성  
※ 김원태 의원(문화복지위원회) 현안사업

# 당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 0 1 5 년	-	-	-	-
2 0 1 6 년	1개소	30,000	15,000	15,000
증 감	1개소	30,000	15,000	15,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목 적 :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량 : 1개소(당진시노인종합복지관)
- 총사업비 : 30,000천원(도비 15,000, 시군비 15,000)
- 사업내용 : 노인복지관 노후 및 부족한 장비 보급을 통해 효율적인 노인 여가 활동 증진 도모
  - 정정희 의원 현안사업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 계상이유

- 노인복지관 장비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 및 쾌적한 여가 복지시설 제공
  - ※ 정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현안사업

## 부여 세도복지회관 기능보강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 0 1 5 년	-	-	-	-
2 0 1 6 년	1개소	<b>100,000</b>	<b>50,000</b>	<b>50,000</b>
증 감	1개소	100,000	50,000	50,000

※ 재원율 : 도비 50%, 시군비 50%

### ■ 사업개요

- 목 적 :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량 : 1개소(부여군세도복지회관)
- 총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사업내용 : 건물 노후화에 따른 전체적인 노인복지관 개보수  
- 계룡시(조치연 의원) 현안사업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 계상이유

- 노후화된 복지회관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 조치연 의원(계룡시,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사업

# 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회	9,000	9,000	-
2016년	2회	9,900	9,900	-
증 감	-	900	90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내 용 : 노인생활(재가) 시설에 종사자(요양보호사 등)에게 서비스 제고 및 자질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 법인관리, 재무회계, 서비스 마인드 교육, 사례관리방법 등

- 사 업 량 : 2회(노인복지협회 1회, 재가노인복지협회 1회)

- 산출기초

- 노인복지협회 4,950천원/ 재가노인복지협회 4,950천원
- 강사료, 강의실 임대료, 급량비, 현수막, 교재제작 등

## □ 2015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 '15년 재가종사자 보수교육(7. 9), 충주 깊은산속옹달샘/147명:4,500천원 지원
- '15년 생활시설종사자 보수교육(8.21), 대천 한화리조트/125명:4,5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회 : 9,9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요양보호사의 어르신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및 요양기술 습득과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계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시군	합계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27	675	310	125	17	601	269	97	10	74	41	29
천안	9	192	98	33	9	192	98	32	0	0	0	0
공주	2	183	64	17	1	178	64	16	1	5	0	2
보령	0	0	0	0	0	0	0	0	0	0	0	0
아산	3	114	29	19	2	105	24	19	1	9	5	3
서산	0	0	0	0	0	0	0	0	0	0	0	0
논산	4	35	27	14	0	0	0	0	4	35	27	14
계룡	0	0	0	0	0	0	0	0	0	0	0	0
당진	2	60	50	17	2	60	50	17	0	0	0	0
금산	2	15	6	5	1	9	4	3	1	6	2	2
부여	0	0	0	0	0	0	0	0	0	0	0	0
서천	2	13	7	8	0	0	0	0	2	13	7	8
청양	0	0	0	0	0	0	0	0	0	0	0	0
홍성	1	29	16	6	1	29	16	6	0	0	0	0
예산	1	28	13	4	1	28	13	4	0	0	0	0
태안	1	6	0	0	0	0	0	0	1	6	0	0

○ 노인의료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시군	합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 자수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합계	251	7,758	6,531	4,193	146	6,842	5,752	3,634	105	916	779	559
천안	44	1,330	1,125	711	25	1,169	986	610	19	161	139	101
공주	22	681	533	338	16	630	496	312	6	51	37	26
보령	11	383	342	218	7	350	315	201	4	33	27	17
아산	26	679	575	339	15	580	490	285	11	99	85	54
서산	17	575	488	335	11	523	440	296	6	52	48	39
논산	25	652	567	358	16	572	505	315	9	80	62	43
계룡	8	194	179	110	3	150	143	84	5	44	36	26
당진	16	696	581	391	10	642	535	358	6	54	46	33
금산	19	341	309	206	5	215	195	124	14	126	114	82
부여	9	510	450	281	7	492	433	271	2	18	17	10
서천	9	429	389	239	8	420	383	235	1	9	6	4
청양	6	222	199	125	5	213	190	121	1	9	9	4
홍성	12	271	204	134	4	200	140	95	8	71	64	39
예산	14	391	302	212	6	322	245	162	8	69	57	50
태안	13	404	288	196	8	364	256	165	5	40	32	31

○ 재가노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시군	합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지원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자 수	시설 수	이용 인원	종사자 수
합계	124	4,166	1,269	44	1,786	883	25	414	152	4	4	8	27	213	140	24	1,749	86
천안	32	926	338	13	386	256	9	148	61	0	0	0	5	3	2	5	389	19
공주	10	412	133	3	280	113	1	25	7	0	0	0	3	7	5	3	100	8
보령	4	133	32	1	33	22	1	18	5	0	0	0	1	2	2	1	80	3
아산	12	683	113	5	343	67	2	31	11	0	0	0	1	3	22	4	306	13
서산	8	231	100	3	101	62	2	43	17	0	0	0	2	17	16	1	70	5
논산	3	111	32	1	30	26	0	0	0	0	0	0	1	1	2	1	80	4
계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당진	4	169	74	1	50	33	1	9	3	0	0	0	1	30	34	1	80	4
금산	1	80	3	0	0	0	0	0	0	0	0	0	0	0	0	1	80	3
부여	7	343	79	2	80	54	1	22	6	0	0	0	2	81	10	2	160	9
서천	16	289	118	5	84	69	4	82	26	2	4	6	4	38	13	1	81	4
청양	8	325	94	4	132	72	1	20	7	0	0	0	1	6	8	2	167	7
홍성	10	334	114	3	219	81	2	16	9	1	0	2	3	17	18	1	82	4
예산	3	122	31	1	48	28	0	0	0	0	0	0	1	0	0	1	74	3
태안	6	8	8	2	0	0	1	0	0	1	0	0	2	8	8	0	0	0

# 노인생활시설 어르신 및 종사자 한마당 대회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회	15,000	15,000	-
2016년	1회	13,500	13,500	-
증 감	-	△1,500	△1,50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대 상 : 노인생활(요양)시설 어르신 및 종사자
- 내 용 : 시설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 화합의 장 마련으로 네트워크 활성화 및 어르신의 문화욕구 충족

※ 프로그램 구성 : 유공자 표창, 어르신 장기자랑, 작품전시, 축하공연 등

- 보조사업자 : 충남노인복지협회

### < 충남노인복지협회 현황 >

회 장 : 정 용(서천, 금매복지원 대표)

회원기관 : 47개소(노인요양시설)

기 능 : 노인복지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 및 시설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복리 증진

## □ 2015 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2015. 5. 18/공주 백제체육센터/500여명 : 도비 15,000천원 지원
- (향후계획) 노인생활시설 어르신 및 종사자 한마음 대회 : 13,50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노인생활시설 어르신 및 종사자들의 화합의 장 마련으로 시설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계상

#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65명	-	-	-
2016년	165명	243,360	48,344	195,016
증 감	-	243,360	48,344	195,016

※ 재원율 : 도비 20%, 시군비 80%

## ■ 사업개요

- 지원인원 : 노인복지관 종사자 165명
- 지원기준 : 근무년수별 1인당 월 9만원~15만원 차등 지급

근무기간별	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이상
지원액	1인당 월 9만원	1인당 월 12만원	1인당 월 15만원

- 내 용 : 노인복지관 종사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 산출기초
  - 3년 미만 :  $90,000\text{원} \times 58\text{명} \times 12\text{개월} = 62,640\text{천원}$
  - 3~5년 미만 :  $120,000\text{원} \times 33\text{명} \times 12\text{개월} = 47,520\text{천원}$
  - 5년 이상 :  $150,000\text{원} \times 74\text{명} \times 12\text{개월} = 133,200\text{천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241,720천원 지원
  - ※ 제1회 추경 반영 지원

## ■ 계상이유

-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계상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16년	25개시설	1,405,080	281,016	1,124,064-
증 감	-	-	-	-

※ 재원율 : 도비 20% 시군비 80%

## □ 사업개요

- 목 적 :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 대 상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2008.7. 1 이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 사 업 량 : 826명(25개 시설)
- 내 용 :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지원기준 : 3년미만(월100천원), 3~5년미만(월150천원), 5년이상(월180천원)
- 산출기초 : 3년미만(346명×100천원×12개월)+3~5년미만(131명×150천원×12개월)  
+5년이상(349명×180천원×12개월) = 1,405,080천원

## □ 2015 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노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5개시설 : 1,405,080천원 지원
- (향후계획)노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25개시설 : 1,405,08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25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예정 현황

(단위 :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25개시설	1,405,080	281,016	1,124,064
천안시	4	280,680	56,136	224,544
공주시	—	—	—	—
보령시	3	229,080	45,816	183,264
아산시	2	106,680	21,336	85,344
서산시	3	151,560	30,312	121,248
논산시	4	162,480	32,496	129,984
계룡시	—	—	—	—
당진시	2	117,240	23,448	93,792
금산군	1	14,040	2,808	11,232
부여군	3	142,440	28,488	113,952
서천군	1	81,360	16,272	65,088
청양군	—	—	—	—
홍성군	2	119,520	23,904	95,616
예산군	—	—	—	—
태안군	—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16년	22개시설	159,480	31,896	127,584
증 감	-	-	-	-

※ 재원율 : 도비 20% 시군비 80%

## □ 사업개요

- 목 적 :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 대 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2008.7. 1 이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
- 사 업 량 : 114명(22개 시설)
- 내 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년수별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기준 : 3년미만(월 90천원), 3~5년미만(월120천원), 5년이상(월150천원)
- 산출기초 : 3년미만(48명×90천원×12개월)+3~5년미만(31명×120천원×12개월)  
+5년이상(35명×150천원×12개월) = 159,480천원

## □ 2015 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2개시설:159,480천원 지원
- (향후계획)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2개시설:159,480천원 지원

## □ 계상이유

- 22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단위 : 천원)

시군명	사업량	계	도 비	시군비
계	22개시설	159,480	31,896	127,584
천안시	5	30,600	6,120	24,480
공주시	1	11,160	2,232	8,928
보령시	1	10,800	2,160	8,640
아산시	4	27,000	5,400	21,600
서산시	1	6,840	1,368	5,472
논산시	1	7,560	1,512	6,048
계룡시	—	—	—	—
당진시	1	5,400	1,080	4,320
금산군	1	7,200	1,440	5,760
부여군	2	16,200	3,240	12,960
서천군	1	7,920	1,584	6,336
청양군	2	14,400	2,880	11,520
홍성군	1	9,360	1,872	7,488
예산군	1	5,040	1,008	4,032
태안군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 예산현황

구분	사업량	재원별 (천원)				시군비
		합계	소계	국비	도비	
2015년	2개소	578,010	578,010	289,005	289,005	
2016년	2개소	621,232	621,232	310,616	310,616	
증감	-	43,222	43,222	21,611	21,611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50%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개소

기관명	관장	설치일	수탁기관	위탁기간	직원	보조금 지원액
2개소					15명	621,232
충남(나형)	진정수	'04.09.24	호서복지재단	'15.10.~'18.12.	8명	331,324
충남남부(다형)	오복경	'14.07.01	죽림원	'14.7.~'17.6.	7명	289,908

○ 사업내용 :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현장 조사, 피해노인 상담 등

## ■ 2015 추진실적

구분	합계	충남	충남남부
학대신고	805건	691	114
학대판정	203건 (신체13, 정서27, 방임45, 기타16, 2개이상102)	161	42
예방교육	640회(8,778명)	438회(3,351명)	202회(5,427명)

## ■ 계상이유 :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복지부 지원기준 인상

○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복지부 지원기준 인상

노인보호전문기관

가. 일반현황

기관명	관장 (생년월일)	수탁기관	위탁기간	직원	예산액 (천원)	면적	건물형태
2개소				15명	928,733		
충남 (아산)	진정수	호서복지재단	'15.10.~'18.12. (3년)	8명	573,218	355.7m <sup>2</sup>	자가
충남남부 (논산)	오복경 (69.02.05)	죽림원	'14.7.~'17.6. (3년)	7명	355,515	127.5m <sup>2</sup>	임대

나. 연도별 신고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1,159	1,159	-	747	702	45	805	691	114
일반사례	945	945	-	543	532	11	602	530	72
학대사례	214	214	-	204	170	34	203	161	42

다. 피해자 유형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14	214	0	204	170	34	203	161	42
신체	9	9		14	11	3	13	9	4
정서	25	25		22	15	7	27	22	5
방임	81	81		33	30	3	45	35	10
기타	13	13		19	10	9	16	15	1
2개 이상	86	86		116	104	12	102	80	22

라. 피해자 연령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14	214	0	204	170	34	203	161	42
60~69세	34	34	-	26	20	6	33	29	4
70~79세	71	71	-	83	69	14	91	70	21
80~89세	87	87	-	83	70	13	59	45	14
90세이상	22	22	-	12	11	1	20	17	3

마. 행위자 유형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14	214	0	204	170	34	203	161	42
본인	7	7		9	4	5	14	10	4
배우자	26	26		16	12	4	36	29	7
자녀	62	62		71	56	15	80	63	17
친인척	10	10		18	16	2	12	10	2
타인	10	10		13	8	5	14	10	4
시설및기관	83	83		68	65	3	36	30	6
2개 이상	16	16		9	9	-	11	9	2

바. 행위자 연령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214	214	0	204	170	34	203	161	42
30세 이하	2	2		2	1	1	4	2	2
30~39세	11	11		36	35	1	15	13	2
40~49세	52	52		55	48	7	53	44	9
50~59세	95	95		58	52	6	55	45	10
60~69세	24	24		28	19	9	18	11	7
70세 이상	30	30		25	15	10	58	46	12

사. 예방교육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충남	남부	
합계	회	188	188	0	381	365	16	640	438	202
	명	4,215	4,215	0	4,196	3,681	515	8,778	3,351	5,427
신 고의무자	회	139	139		278	270	8	436	374	62
	명	1,666	1,666		1,397	1,027	370	2,765	1,302	1,463
비신 고의무자	회	49	49		103	95	8	204	64	140
	명	2,549	2,549		2,799	2,654	145	6,013	2,049	3,964

신고의무자 : 의료인, 노인시설종사자, 사회복지공무원, 복지관, 가정폭력상담기관 종사자, 구급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비신고의무자 : 일반인(미취학, 학생, 노인), 관련기관 종사자(관공서, 경찰서 등)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가. 일반현황

시설명	시설장	운영기관	직원	예산액	입소정원	건물형태
푸른쉼터	진정수	충남노인보호전문	4명	174백만원	5명	자가

나. 입소현황

구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	
실인원 (명)	소계	97	72	66
	입소	34	28	40
	이용	63	44	39

# 학대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1개소	168,126	168,126	84,063	84,063	
2016년	1개소	174,820	174,820	87,410	87,410	
증 감		6,694	6,694	3,347	3,347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50%

## ■ 사업개요

- 운영목적 : 학대피해노인 보호, 재학대 예방, 원가정 회복지원
- 운영현황 : 1개소(푸른쉼터,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부설)

### 기본 현황

- 소 재 지 : 아산('11.3.17 개소)
- 직 원 : 5명(센터장 1(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겸직), 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3)
- 정 원 : 5인(60세이상 학대피해 노인)
- 입소기간 : 최장 4개월 (3개월 + 1개월 연장)

- 지원내용 : 인건비(88,060천원) 및 사업비(86,760천원)
- 주요사업 : 피해자보호, 심리안정을 위한 치료 및 프로그램, 상담 등

## ■ 2015 추진실적

- (추진실적) 학대피해노인 40명(실인원) 보호 / 평균입소기간 28.4일
  - 연령별 : 60~69세(9명), 70~79세(14명), 80~89세(8명)
  - 지원내용 : 의료지원, 심리검사, 얼굴마사지, 이미용, 음악치료 등

## ■ 계상이유

- 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 4명 인건비(사회복지사 1, 요양보호사 3) 및 학대피해노인 심신 치료를 위한 비용 계상

#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개소	40,000	40,000	
2016년	2개소	57,000	57,000	
증 감		17,000	17,00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 지원액 : 기관별 28,500천원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시설 입소 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실태 조사
  - 학대 신고의무자(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및 비신고 의무자(일반인) 예방교육 등
- 산출기초 : 28,500천원×2개소

## ■ 2015. 추진실적

- 학대예방교육 : 640회(8,778명)

구분	계	충남	충남남부
합계	640회(8,778명)	438회(3,351명)	202회(5,427명)
신고의무자	436회(2,765명)	374회(1,302명)	62회(1,463명)
비신고의무자	204회(6,013명)	64회(2,049명)	140회(3,964명)

## ■ 계상이유 : 잠재적 학대 사례 발굴 등

- '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9.9%가 학대를 경험하였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12.9%에 불과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 및 잠재적 학대 사례\* 발굴을 위해 계상

\*도내 잠재적 학대사례 : 34천명 추정(340천명×9.9%)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16년	19명	29,880	29,880	
증 감	19명	29,880	29,88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지원인원 : 19명(보호전문기관 15명, 쉼터 4명)
- 지원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처우개선비 지원
  - 3년 미만 9만원, 3~5년 12만원, 5년 이상 15만원
- 산출기초
  - 3년 미만 : 4명× 90천원×12개월 = 4,320
  - 3~5년 미만 : 6명×120천원×12개월 = 8,640
  - 5년 이상 : 9명×150천원×12개월 = 16,200

## ■ 2015년 추진실적

- 근무연수에 따라 종사자(노인보호전문기관 15명, 쉼터 4명) 처우개선비 지급

## ■ 계상이유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사기진작(24시간 운영체제)에 따른 계상

# 충남노인복지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식	8,500	8,500	-
2016년	1식	7,650	7,650	-
증 감	-	△850	△85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충남노인복지포털사이트 유지보수 용역
- 운영목적 : 노인들이 각종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 방문 없이 구축된 포털을 통해 기관·단체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충남노인복지포털사이트 운영.(수의계약 - (주)케이쓰리아이)  
-유지보수기관:(주)케이쓰리아이 -계약기간:15.1.19.~12.31. -계약액:금6,630,000원
- (향후계획) 16년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 ■ 계상이유

- 노인 관련 사업내용 및 규정 변경 등 관련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유지보수

### 《 홈페이지 화면 》



#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00부	3,000	3,000	
2016년	2,000부	2,700	2,700	
증 감	-	△300	△30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대 상 : 노인복지시설 405개소
- 지 원 : 노인복지시설 관리지침 책자
- 내 용 : 노인요양시설 회계 등 관리 안내 지침 인쇄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안내 지침 2,000부 배포
- (향후계획) 안내 지침 2,000부 배포

## ■ 계상이유

- 노인복지시설의 지침 교육을 통한 명확성, 투명성 등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000부	1,500	1,500	
2016년	2,000부	1,350	1,350	
증 감	-	△150	△150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대 상 : 노인복지시설 내 요양보호사
- 지 원 :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책자
- 내 용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인쇄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안내 지침 2,000부 배포
- (향후계획) 안내 지침 2,000부 배포

## ■ 계상이유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전달 교육을 통한 기능·지적 수준을 강화하고 노인성 치매·중풍 질환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생활공감정책 업무추진(사무관리비)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11명	10,000	10,000	-
2016년	211명	4,500	4,500	-
증 감	-	△5,500	△5,50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 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 사업량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총남 211명
- 사업내용 : 모니터단을 통해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자원봉사 및 나눔활동
- 지원내용 : 간담회 시 강사료, 인쇄비, 시설 임차료 등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 제5기 모니터단 추진실적 》

- ◇ 구성인원 : 211명(여 90%, 남 10%) \* 위촉기간 : '15.3.1. ~ '16.2.28. (1년간)
  - 연령별 : 20~30대 15.2%, 40~대 81%, 60대 이상 3.8%
  - 직업별 : 주부 41.2%, 회사원 8.5%, 자영업 5.2%, 기타 45.1%
- ◇ 주요역할 :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지방행정 모니터링, 자원봉사
- ◇ 추진실적 : 시군대표 간담회(3월), 역량강화워크숍(8월), 중앙연찬회(9월), 도연찬회(12월예정)

- (향후계획)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 ■ 계상이유

- 현장중심의 생활공감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활동비, 실비보상비 등 계상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연찬회(행사운영비)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11명	15,000	15,000	-
2016년	211명	16,200	16,200	-
총 감	-	1,200	1,20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 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 사업량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총남 211명
- 사업내용 : 모니터단을 통해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자원봉사 및 나눔활동
- 지원내용 : 도 주관 연찬회(12월) 개최에 따른 시설임차료, 강사료, 식비 등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 제5기 모니터단 추진실적 》

- ◇ 구성인원 : 211명(여 90%, 남 10%) \* 위촉기간 : '15.3.1.~'16.2.28. (1년간)
  - 연령별 : 20~30대 15.2%, 40~대 81%, 60대 이상 3.8%
  - 직업별 : 주부 41.2%, 회사원 8.5%, 자영업 5.2%, 기타 45.1%
- ◇ 주요역할 :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지방행정 모니터링, 자원봉사
- ◇ 추진실적 : 시군대표 간담회(3월), 역량강화워크숍(8월), 중앙연찬회(9월), 도연찬회(12월예정)

- (향후계획)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 ■ 계상이유

- 현장중심의 생활공감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활동비, 실비보상비 등 계상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연찬회 참석자실비보상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211명	5,000	5,000	-
2016년	211명	6,300	6,300	-
총 감	-	1,300	1,300	-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 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 사업량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총남 211명
- 사업내용 : 모니터단을 통해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자원봉사 및 나눔활동
- 지원내용 : 간담회, 워크숍 참석에 따른 참여자 여비(일비,식비,교통비) 등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 제5기 모니터단 추진실적 》

- ◇ 구성인원 : 211명(여 90%, 남 10%) \* 위촉기간 : '15.3.1. ~ '16.2.28. (1년간)
  - 연령별 : 20~30대 15.2%, 40~대 81%, 60대 이상 3.8%
  - 직업별 : 주부 41.2%, 회사원 8.5%, 자영업 5.2%, 기타 45.1%
- ◇ 주요역할 :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지방행정 모니터링, 자원봉사
- ◇ 추진실적 : 시군대표 간담회(3월), 역량강화워크숍(8월), 중앙연찬회(9월), 도연찬회(12월예정)

- (향후계획)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 ■ 계상이유

- 현장중심의 생활공감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활동비, 실비보상비 등 계상

#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211명	30,000	30,000	7,500	22,500	-
2016년	211명	30,000	30,000	7,500	22,500	-
증 감	-	-	-	-	-	-

※ 재원을 : 국비 25%, 도비 75%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 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 사업량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총남 211명
- 사업내용 : 모니터단을 통해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자원봉사 및 나눔활동
- 지원내용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 및 실비보상 등 지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 제5기 모니터단 추진실적 》

- ◇ 구성인원 : 211명(여 90%, 남 10%) \* 위촉기간 : '15.3.1.~'16.2.28. (1년간)
  - 연령별 : 20~30대 15.2%, 40~대 81%, 60대 이상 3.8%
  - 직업별 : 주부 41.2%, 회사원 8.5%, 자영업 5.2%, 기타 45.1%
- ◇ 주요역할 :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지방행정 모니터링, 자원봉사
- ◇ 추진실적 : 우수모니터 17회 선정, 제안신청 518건(15.3~10.)

- (향후계획)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 ■ 계상이유

- 현장중심의 생활공감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활동비, 실비보상비 등 계상

# 행복한 충남 복지정책 홍보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2015년	1식	30,000	30,000	
2016년	1식	30,000	30,000	
증 감				

※ 재원율 : 도비 100%

##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복지보전 주요시책 및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홍보활동
- 사업량 : 5단 박스기사 20회 / 1회당 1,500
- 주요내용
  - 복지보전관련 주요 역점 추진시책 및 주요성과
  - 신규시책 발굴 및 복지보전 분야 최신정보, 행사 정보 제공 등

## ■ 계상이유

- 저출산·고령화, 자살예방 등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인식 개선 필요
- 각종 정책들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등

# 노인 예방접종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466,686명	2,934,600	1,907,490	1,467,300	440,190	1,027,110
2016년	466,686명	6,774,340	4,403,321	3,387,170	1,016,151	2,371,019
증 감	-	3,839,740	2,495,831	1,919,870	575,961	1,343,909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 사업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466,686명(인플루엔자 330,807명, 폐렴구균 135,879명)
- 내 용 : 65세 이상 예방접종비(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지원을 위한 보건소 약품비(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인플루엔자) 지원
- 산출기초 : 466,686명
  - 20,737원(1인당 평균지원액) × 466,686명 × 70%(예방접종률)
  - ※ (백신단가) 인플루엔자 7,500원(보건소)/8,590원(의료기관), (시행비) 12,150원

## ■ 2015.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65세이상 인플루엔자 284,332건(107%), 폐렴구균 예방접종 33,159건('15.12.31 기준)
- (향후계획)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지속적인 접종 지원

## ■ 계상이유

- '15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기존)보건소→(변경)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른 백신 구입비 및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부담분 반영
-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시행하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편의성, 안전성 및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접종비 지원 예산임

## 노인의치사업 지원

### ■ 예산현황

구 분	사업량	재 원 별 (천원)				
		합계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5년	506명	1,098,880	659,328	549,440	109,888	439,552
2016년	240명	367,200	220,320	183,600	36,720	146,880
증 감	△266명	△731,680	△439,008	△365,840	△73,168	△292,672

※ 재원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 ■ 사업개요

- 사업량 : 240명
-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 전환자
- 내용 : 완전의치(틀니)·부분의치(틀니) 시술 비용
- 지원범위
  - 전부의치 : 65~69세(1악당 1,051천원), 70세 이상(1악당 1,051천원의 20~30%)
  - 부분의치 : 최대 1,864천원

### ■ 2015. 추진실적

- 지원 인원(12월말 기준) : 707명

※ 2014년 12월말 실적 : 680명

### ■ 계상이유 : 사업량 감 266명 / 사업비 감 439백만원 (국 366, 도 73)

- 노인의치시술에 대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2016.7.1.부터 본 사업의 국비지원을 종료할 예정임
- '16년 상반기에만 지원하는 인원이 240명으로 감소하여 사업비 감액



## 웰 다잉법(well-dying)의 이해



# 웰다잉법(well-dying)의 이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김 병 만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 충청남도



## 머리말

본서는 2016. 02. 03. 제정 및 공포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이라 함)을 간략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깊이있는 이론서라기보다는 노인복지시설 및 호스피스전문시설 등 관련 실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단시일내에 법령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소박한 목적에서 집필한 것이다.

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지금까지 중점을 두었던 웰빙·웰에이징과 더불어 웰다잉까지 아우르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웰다잉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997년 이른바 연명의료중단으로 인하여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라는 실형을 선고받게한 보라매병원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2009년 혼수상태에 빠지고 회복의 가능성을 상실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낸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으로 절정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사회·시민단체와 국회에서도 법령제정을 위한 논쟁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한 논쟁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사람답게 죽을 권리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죽음이라는 가법지만은 않은 문제였기에 많은 찬·반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본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 되었기에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에 대한 하위법령 등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고,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책을 내기에는 성급한 면도 없지 아니하였다. 서두르게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 등을 소개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부분을 좀더 보충하지 못한 점이 아쉬우나,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2016년 봄을 기다리는 길목에서

편저자 씀



# 차 례

## 1. 서설

- (1) 개관
- (2) 웰다잉법의 제정경위

## 2. 총칙

- (1) 목적
- (2) 용어정리
  - 1) 임종과정
  -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3) 말기환자
  - 4) 연명의료
  - 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 6) 호스피스·완화의료
  - 7) 담당의사
  - 8) 연명의료 계획서
  -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3) 기본원칙
  - 1) 인간의 존엄성 침해금지
  - 2) 알권리
  - 3) 설명의무
- (4) 국가 등의 책무
  - 1) 호스피스의 날 지정
  - 2)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의 설치
  - 3) 종합계획의 시행 및 수립

##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운영

-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지정
-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 1)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 2) 담당의사의 정보제공
  - 3)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요청
  -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 5) 변경 및 철회
  - 6) 통보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 1) 등록기관의 지정
  - 2) 업무
  - 3) 보고의무
  - 4) 벌칙
  - 5) 신고
  - 6) 관련기록의 이관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방법
  - 1) 작성자
  - 2) 설명 및 확인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포함사항
  - 4) 등록 및 보관
  - 5) 통보의무
  - 6) 변경 및 철회
  - 7) 효력의 상실
- (5)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 1) 취소권자
  - 2) 취소의 사유
  - 3) 지정등록의 제한
  - 4) 기록의 이관
  - 5) 청문
-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등록
  - 2) 윤리위원회의 업무
  - 3) 윤리위원회의 구성
  - 4) 위촉 및 호선
  - 5) 공용윤리위원회
  - 6) 업무의 위탁
  - 7) 과태료 부과

#### 4.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1) 주체
  -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사유
  - 3)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4) 환자의 의사 확인
  - 5) 등록의 조회 요청
  - 6) 결과의 기록
  - 7)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1) 이행시기
  - 2) 이행의 방법
  - 3) 기록의 보존
- (3) 벌칙

## 5.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 (1) 호스피스 사업
  - 1) 사업의 주체
  - 2) 사업내용
- (2) 중앙호스피스센터
  - 1)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 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
  - 3) 시정 명령
  - 4) 지정의 취소
- (3) 권역별호스피스센터
  - 1) 권역별 센터의 지정
  - 2) 권역별센터의 업무내용
  - 3) 시정 명령
  - 4) 지정의 취소
- (4) 호스피스전문기관
  - 1) 지정
  - 2) 지정취소
  - 3) 청문의 실시
  - 4) 변경·폐업 등의 신고
  - 5) 의료인의 설명의무
  - 6) 호스피스의 신청
  - 7)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 6. 보칙

- (1) 정보 유출 금지
  - 1) 정보유출 금지 내용
  - 2) 벌칙
- (2) 기록 열람 등
- (3) 보고 및 조사 등
  - 1) 보고
  - 2) 조사
-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 서 설

## (1) 개 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가고(well being), 사람답게 늙어가고(well aging), 싶어 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well being과 well aging에 초점이 맞추어져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행중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도 이에 맞추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답게 늙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답게 죽는(well dying)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다. 중국의 진시황제가 죽지 않기 위하여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결국에는 죽고 말았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지만, 죽음에도 품격 있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바로 well dying이다.

well dying이란 품격있는 죽음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뇌사에 빠지거나, 의식불명의 상태에서도 몇 달 아니 몇 년씩이라도 각종 의료 기구에 의지하여 생물학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왔던 것이다. 즉,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통하여 환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환자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인적 물적 부담을 안겨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서는 1997년 이른바 보라매병원사건,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등을 계기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어 십 수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연명의료의 중단을 제도화한 이른바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 (2) 웰다잉법<sup>1)</sup>의 제정경위

이른바 웰다잉법을 제정하게 된 사건이 있다.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sup>2)</sup>이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1997. 12. 4. 14:30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찰라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피해자는 의료진에 의하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호흡 보조 장치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의 처는 여러 차례 담당주치의에게 집으로 퇴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담당 주치의가 환자를 집으로 퇴원시킬 경우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처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담당 의료진도 할 수 없이 퇴원 승낙을 하여 1997. 12. 6. 14:20경 피해자를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 신고 피해자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집에 돌아간 후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수동 작동 중이던 인공호흡 보조 장치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여 감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사망 하였다.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담당 주치의 및 전문의에게 살인방조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1) 본 법률의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지만, 이하 웰다잉(well dying)법으로 한다.

2)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이 사례는 웰다잉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료계로 하여금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 면이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sup>3)</sup>이다.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이 발생해 회복불능의 뇌 손상을 입어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사건은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김 할머니가 조직 검사를 받다가 의식불명에 빠지게 된다. 가족들은 품격있는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의료진에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은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김할머니의 가족은 법원에 연명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결국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하여 병원측은 연명의료 기구인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른바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이어졌다. 보라매병원 사건 후 십수 년의 논란 끝에 2016. 02. 0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그 결실을 맞게 된 것이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 및 그동안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한 것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2. 총칙

### (1) 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sup>4)</sup>·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것(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행복추구권<sup>5)</sup>을 천명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인간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생명연장으로 인한 환자 본인의 고통은 물론, 그 가족들의 인적·물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의미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과연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로 볼 수가 있겠다.

### (2) 용어정리

#### 1) 임종과정

사람이 죽음에 임박한 상태인 임종과정을 ① 회생의 불가능성, ②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회복성, ③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법 제2조 제1호)로 보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환자의 상태가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메고 있다하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3)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4) 말기 암환자 등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시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이는 연명을 위한 단순한 차원의 수용시설이 아니라 인생의 말기를 맞은 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국의 성(聖) 크리스토퍼 호스피스가 효시이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C%8A%A4%ED%94%BC%EC%8A%A4>, 2016.1.25.)

5)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sup>6)</sup>

##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자(법 제2조 제2호), 즉 2명의 의사가 임종과정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엄격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 3) 말기환자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말기환자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전제로 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불가능성과 증상의 악화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동조 제3호)를 말한다. 이는 종전에 “암환자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있는 것을 암환자 이외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 4)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동조 제4호)을 말한다.

## 5)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동조 제5호)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하였듯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인위적인 생명연장의료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생명연장행위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동조 제6호)를 말한다.

긴 병간호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환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이러한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인 것이다.

## 7) 담당의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sup>7)</sup>로서 말기환자 등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동조 제7호)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한다.

6)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5, 14면; 인간의 생명은 경제적 가치로 측정될 수 없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단계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그의 자기결정권에 전혀 근거함이 없이, 단순히 치료비라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죽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7) 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8)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것(동조 제8호)을 말한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서식 및 작성·등록·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0조 제7항)

##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법 제2조 제9호)을 말한다. 그 내용으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의 이용, 작성일시 및 보관방법,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법 제12조 제3항)

## (3) 기본원칙

### 1) 인간의 존엄성 침해금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법 제3조 제1항)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천명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헌법의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다.

### 2) 알권리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동조 제2항)

이는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8)</sup>

### 3) 설명의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sup>9)</sup>(이하 ‘의료인’이라 함)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함으로서(동조 제3항)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 (4) 국가 등의 책무

### 1) 호스피스의 날 지정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법 제6조 제1항)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동조 제2항)으로서 말기환자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8) 헌재 2010. 12. 28. 2009헌바258, 판례집 22-2하, 721 [합헌,각하]

9) “의료법”상의 의료인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외에도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하고 있다.

2)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설치 목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소 속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의 자격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임명권자	보건복지부 장관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3) 종합계획의 시행 및 수립

① 종합계획의 내용(법 제7조 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한 추진방향 및 기반 조성</li> <li>2.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의 시행·지원</li> <li>3.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li> <li>4.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의 개발보급</li> <li>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li> <li>6. 다양한 호스피스 사업의 개발</li> <li>7.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

② 수립 및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국가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동조 제1항)

③ 협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10)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7.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9.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⑤ 국회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동조 제5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운영**

(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지정(법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동조 제1항)	1.주체: 보건복지부장관 2.목적: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동조 제2항)	1.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3.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

1)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법 제10조 제4항)

<p>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의 이용에 관한 사항</p> <p>2. 법 제10조 제3항 각호(환자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의 확인</p> <p>3.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p> <p>4. 작성연월일</p> <p>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

2) 담당의사의 정보제공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동조 제1항)

3)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요청

말기환자 등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① 작성전의 설명의무(동조 제3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                                     |
|-------------------------------------|
| ※ 설명내용                              |
|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
|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5.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확인사항

담당의사는 위의 내용을 설명한 후에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③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규정한 19세 미만이고, 이들이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민법 제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사려분별이 명확치 아니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확인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5) 변경 및 철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6) 통보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

1) 등록기관의 지정(법 제11조 제1항)

① 지정권자: 보건복지부장관

② 지정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의 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   |
|---|
| 1. “지역보건법” 제2조 <sup>11)</sup>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 2. 의료기관   |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sup>12)</sup> 에 따른 공공기관                           |

11) “지역보건법” 제2조에서 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

## 2) 업무(동조 제2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3) 보고의무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만약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2항 제1호)

## 4) 벌칙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0조 제1항)

## 5) 신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3항 제1호)

## 6) 관련기록의 이관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

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5.28.] [법률 제12673호, 2014.5.28., 타법개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3항 제2호)

####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방법

##### 1) 작성의 주체

작성자가 직접작성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사리분별이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작성의 주체가 아니다.

##### 2) 설명 및 확인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1.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포함사항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일시 및 보관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등록 및 보관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 5) 통보의무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동조 제5항)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7항)

##### 6)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 7) 효력의 상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동조 제8항)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이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5)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1) 취소권자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3조 제1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의 사유

1. 강제 취소(취소하여야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임의 취소(취소할 수 있음)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명령·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등록의 제한

동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동조 제2항)

4) 기록의 이관

등록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3항 제2호)

5)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sup>13)</sup>을 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1호) 다시 말하자면 지정취소라는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불이익 처분 시 마지막으로 소명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등록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2) 윤리위원회의 업무(동조 제2항)

13) “청문”이란 행정에 관한 정책이나 구체적인 조치의 결정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절차이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li> <li>2. 제19조 제2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li> <li>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li> <li>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li> <li>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

3) 윤리위원회의 구성(동조 제3항)

- 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으로 구성
- ②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 불가
- ③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4) 위촉 및 호선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조 제4항)

5) 공용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6항)

6) 업무의 위탁

타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를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5항)

7) 과태료 부과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1호)

**4.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1) 주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이를 결정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사유(동항 각호)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2. 법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li> </ol> |
|--|

3)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4) 환자의 의사 확인(법 제17조 제1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li> <li>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li> <li>3.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판단</li> <li>-사전의료의향서가 제2조 제4호의 범위 내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li> </ul> </li> <li>4. 법 제17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형제자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친 경우</li> </ol> |
|---|

5) 등록의 조회 요청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확인을 위해 관리기관에 등록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6) 결과의 기록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고,(동조 제3항)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7)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18조 제1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li> <li>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제외)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li> </ol> |
|--|

※ 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함(동조 단서)

##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1) 이행시기

법 제15조 제1항(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사유)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 2) 이행의 방법

#### ① 영양분 등의 공급 중단금지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동조 제2항) 연명의료의 중단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 법의 취지가 품격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있으므로 당연한 규정인 것으로 보인다.

#### ② 담당의사의 교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 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거부를 사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기록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다.(동조 제4항)

#### ④ 통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동조 제5항)한다. 만약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2호)

### 3) 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20조)

1. 연명의료계획서
2. 법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결과
3.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결과
4.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결과
5.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벌칙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하게 한자와 법 제20조의 보관문서의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9조 제1호, 제2호) 또한 법 제20조에 따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0조 제2항)

5.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1) 호스피스 사업

1) 사업의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법 제21조 제2항)

2) 사업내용(동조 제1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li> <li>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 개발 및 보급</li> <li>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li> <li>4. 법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li> <li>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li>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 사업</li> <li>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함)</li> <li>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li> <li>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
|--|

(2) 중앙호스피스센터

1)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상의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법 제23조 제1항)

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업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li> <li>2.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3. 호스피스사업 계획의 작성</li> <li>4.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li> <li>5. 말기환자 등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li> <li>6.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li> <li>7.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
|--|

3) 시정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4) 지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앙센터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3항)

(3) 권역별호스피스센터

1) 권역별 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로 함)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국공립병원을 우선하여 지정한다.(법 제24조 제1항)

2) 권역별센터의 업무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li> <li>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li> <li>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li> <li>4. 말기환자 등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li> <li>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li> <li>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li> <li>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li> <li>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
|--|

3) 시정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그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4) 지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3항)

(4) 호스피스전문기관

1) 지정

① 지정권자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② 지정기준

말기환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 ③ 비용의 차등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2) 지정취소

### ① 지정취소의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 ② 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취소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 ③ 지정의 제한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동조 제3항)

## 3) 청문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호)

## 4) 변경·폐업 등의 신고

### ① 변경사항의 신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 ② 폐업 등의 신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 ③ 과태료의 부과

변경사항 및 폐업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3항 제1호)

## 5) 의료인의 설명의무

### ① 의료인의 설명의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환자 등이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② 의사 등의 설명의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방침을 말기환자 등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6) 호스피스의 신청

① 말기환자등의 신청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② 지정대리인 등의 신청

말기환자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 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③ 신청의 철회

말기환자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동조 제3항)

7)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① 평가의 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② 평가의 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li> <li>2. 호스피스 질 관리 현황</li> <li>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
|--|

③ 평가의 공개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동조 제3항)

④ 평가기관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동조 제4항)

## 6. 보 칙

### (1) 정보 유출 금지

#### 1) 정보유출 금지 내용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2조).

#### 2) 벌칙

정보유출 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9조 제3호)

### (2) 기록 열람 등

환자가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1항)

### (3) 보고 및 조사 등

#### 1)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 2)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2항 제2호)

###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이 아니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3조 제3항 제3호)



## 윤리와 도덕의 정의



# 윤리와 도덕의 정의 ?

노인복지를 위한 실천의식 중심



김병만 법학박사  
건국대학교 / 충남도청

# 어르신을 모시는 명품 자세

Well Aging 및 Well Dying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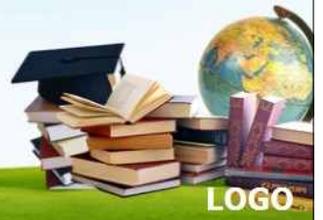
2016. 02. 15.



## 명품이란 ?

- 구찌 지갑 ?
- 버버리 머리띠 ?
- 발리 열쇠고리 ?
- 루이비통 가방 ?
- 발리 슬리퍼 ?
- 루이비통 허리띠 ?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



## 목 차

1 노인복지관련 법령 개관

2 편의시설설치법 이해

3 웰에이징 (Well-aging)

4 웰다잉 (Well-dying) 법의 이해

5 여행에 동행하고 싶은 사람

6 변화에 대하여

6 우리의 선택



# 관포지교

## 삼국지

### 관우를 알아보면

- m 산서성에서 출생, 과감한 도주, 부모의 결단, 도원결의
- m 조조와의 인연, 화용도 사건, 재갈량의 뒷모습

### 義로서 神이 되다

- 약자에게 관대, 강자에게는 우짚  
→ 장시성에서 황충과의 결전, 형주총독
- 재주꾼 손권에게 배신 당함, 낙양의 관우수총

5

LOGO

## 1. 노인복지관련 법령 개관

### 민 주 적

1

- 헌법 - 인간의 존엄성 존중  
-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 노인복지법  
- 노인학대 금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신고의무

3

- 형법  
- 법익보호(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6

LOGO

## 2. 편의시설설치법 이해

### 1. 편의시설관련법의 변천

- 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3조에 “도로.공원 등에 시설이 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
- 85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에는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통로는 경사로 등 지체장애자에게 편리한 구조를 해야 한다.” 고 규명
- 86년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동법 제53조 제2항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및 지체부자유자용 대변기 설치의무 규정

7

LOGO

- 88년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는 승강기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33조에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이 국가 및 지자체 책임으로 설치되도록 권고
- 95. 1월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률이 여러 법률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음  
실효성은 매우 부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 여론 비등  
97. 4.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98. 4. 10일부터 시행

⇒ 기존 장애인관련법이 장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편의증진법은 사회환경 개선에 목적을 둔 국민모두와 관련된 법

8

LOGO

### 3. 웰에이징(well-aging)

사람다운

1

○ 사람답게 사는것=> 웰빙

2

○ 사람답게 늙는것=> 웰에이징

3

○ 사람답게 죽는것=> 웰다잉

9

LOGO

### well-aging (노인의 고통)

4대 고통

1

○ 질병

2

○ 고독

3

○ 빈곤

4

○ 역할상실

10

LOGO

## 4. well-dying 법

인

간

1

○ 존엄성

2

○ 자기결정권

3

○ 행복추구권

4

○ 행복한 임종권(의)

11

LOGO

## well-dying 법

몇가지의  
사 건

1997년 보라매 병원사건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12

LOGO

# well-dying 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 및 이행사항관리

중앙 및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말기환자관리에 필요한  
사업수행

호스피스전문기관

말기환자 대상 호스피스  
이용 등

13

LOGO

## [well-dying]연명의료 중단 절차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

#### 1. 대상 환자 판단(의사 2인)

※의사 2인: 담당 의사+해당 분야 전문의 1인

※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2. 환자 의사 확인 등

##### 명시적 의사

- 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확인

##### 의사 추정

-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사 2인 확인
- ②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의사 2인 확인

##### 의사 추정 불가

- ① (미성년자)법정대리인+  
의사 2인 확인
- ② 가족 전원 합의+  
의사 2인 확인

#### 3.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자료: 보건복지부〉

14

L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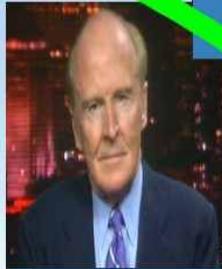
## 5. 여행에 동행 하고 싶은 사람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노인이고  
현재를 말하는 사람은 중년이고  
미래의 꿈을 말하는 사람은 청년이다.”

비즈니스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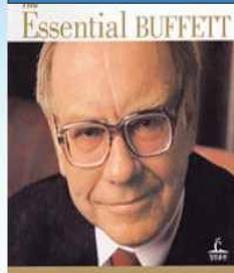
앨빈토플러(23%)  
'제3의 물결' 저자



잭 웰치(20.4%)  
GE의 전 회장

개그맨 김세동  
(18%)

팻(12.8%)  
버크셔해더웨이 회장



Essential BUFFETT

스티븐 코비(10%)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15

LOGO

## 6. 변화에 대하여



마차: 13Km/h



자동차: 150Km/h



KTX: 300Km/h



비행기: 1000Km/h



인터넷: 30만km/초

“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하면  
누구나 빛의 속도로 이용”

→ **Just-in-time / Real time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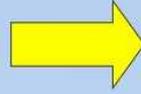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에!

16

L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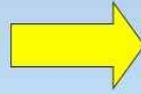
## 1) 변화의 키워드

경제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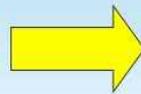
사람중심

성장 · 개발



복지 · 환경

행정편의 중심



민원해결 중심

통제적. 획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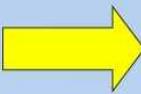
개방적. 다양화

17

LO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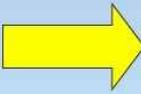
## 2) 변화의 키워드

중앙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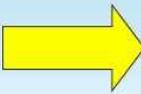
지방분권

통제사회



자율사회

강한 정부



작은 정부

규제의 완화



서비스의 강화

18

LOGO

### 3) 돌봄 서비스의 7원칙



19

LOGO

### 4) '보수적(conservative)'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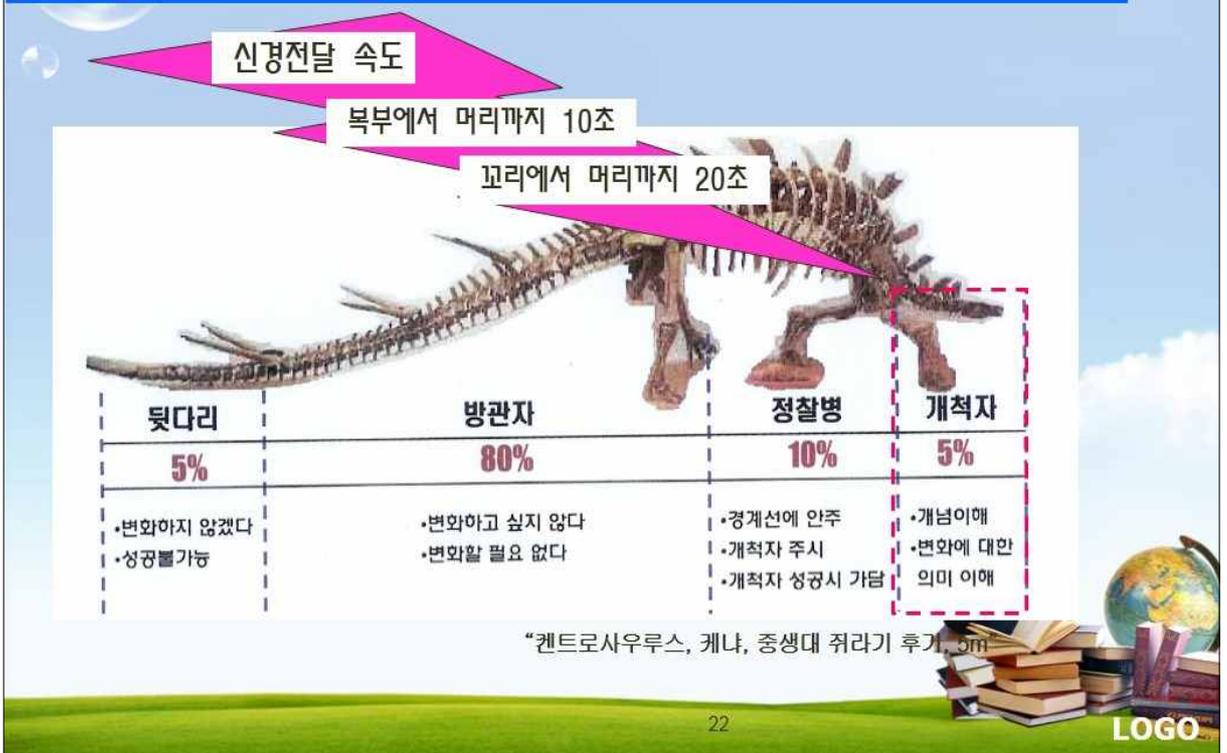
20

LOGO

## 5) 변화는 선택인가?



변화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인재는 5%에 불과



## 7. 우리의 선택



경제부국  
살고 싶은 나라

선진(善進)  
한국창조

도덕강국  
좋아하는 나라

23

LOGO

### 1) “서비스 질”의 경향

“Quantity”



“Quality”

-미국의 R.잉글하트(Ronald Inglehart) 교수-  
삶의 조건이 좋아질 수록 지적·심미적(審美的)만족과  
연결된 목표를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환경 운동, 평화 운동, 여성 운동,  
인권 운동, 문화 운동 등

삶의 질 요건 : 경제적 요인. 환경적요인. 문화적요인

24

LOGO

## 2)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면!



경천애인-와랑도(武士道)-선비도(文士道)-善民道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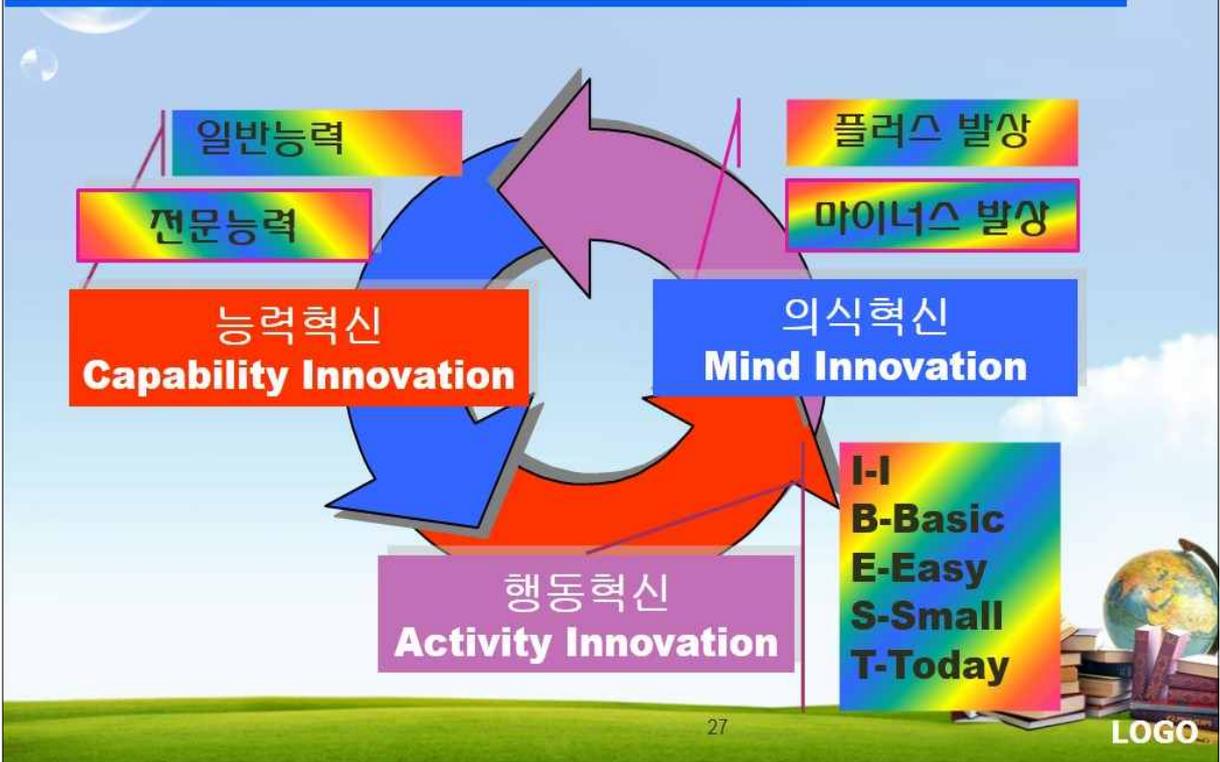
LOGO



26

LOGO

# 결론 : 어르신을 어떻게 모실것 인가?



# 질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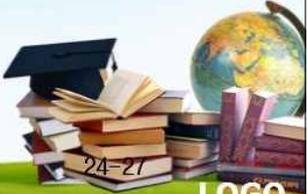


어르신에게는 만족을  
가정에는 행복을  
자신에게는 성공을  
이루는 계기가 되시길....

29

LOGO

감사합니다.



»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30

LOGO





[토론문]

## 충남 well-aging 강화 워크숍 토론문

- 오복경 관장(충남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 강은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경 교수(나사렛대학교)



# 충남 well-aging 강화 워크숍 토론문

충남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오복경 관장

## I. 충남도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 ① 우울 및 자살고위험 재가노인의 심리적지원 지지체계.
- ② 예비노인(베이비부머세대)세대의 심리적지원 및 실버교육체계
- ③ 정년퇴임층 노인을 위한 사회적 재능기부 방안

## II.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사업,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사항

- ① 예산배분의 적절성고려를 위한 예산분석 필요
  - 초고령단계-고령단계-예비노인단계 및 시설-재가등 노인의 연령체계와 주거환경에 따른 예산배분의 적절성 배려
- ②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방안 모색
  - 복지관, 경로당, 보건소등 건강증진실의 균등한 이용을 위한 바우처 쿠폰사용과 정기쿠폰 사용율에 따른 현금지급 등의 방안을 모색 개별적, 직접적 서비스제공 필요(- 사회변화와 노인의 욕구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패러다임 반영함으로 노인들의 과다지출되는 의료비 절감효과 기대
- ③ 노인장기요양예방사업모색
  - 장기요양등급 외 재가노인들의 재활프로그램 제공 쿠폰발행 등으로 장기요양등급진입의 지연효과 기대
- ④ 장기요양등급의 현실적, 효과적 방법을 위한 방안모색
  - 장기요양등급 내 어르신들의 등급변화에 따른 적정 서비스제공을 위한 케어메니지먼트 제도 도입

## III. 기타

- ① 사회적 변화와 현실적 노인문제개입을 위한 경로당 관리체계 모색필요-경당활성화 프로그램의 비효율적인 사업방안 개선필요-경로당내 노인간의 갈등분쟁 심화, 노인 범죄율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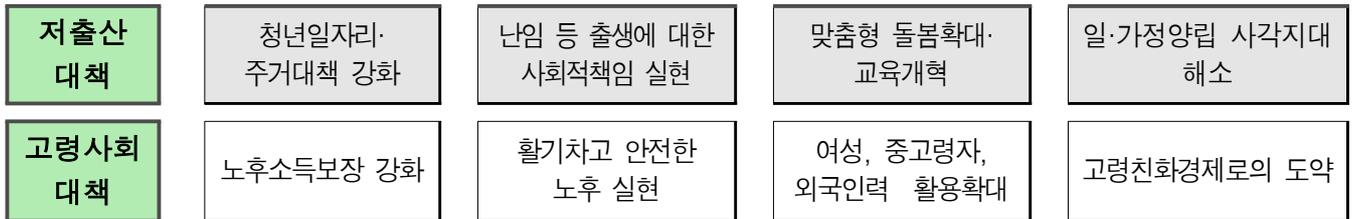


# 충남 well-aging 강화 워크숍 토론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부연구위원

##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요

###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체계도



### 2) 함의

- ① 소득보장: ‘제도권내’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제도권밖’ 에 있는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여성,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영세자  
영업자 등의 국민연금 납부자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택 및 농지연금 가입 제약요건을  
완화 등
- ② 건강보장
  - 노인의 낙상, 약물 오남용,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
  -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 노인치매,  
노인자살, 노인우울 등
  - 후기의료체계(호스피스, 임종케어) 활성화
- ③ 세대통합적 관점 적용: 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노인 이외의 세대에도 함께 참여  
하고 영위한다는 관점에서 추진
  - 고령사회 정책은 노년층만을 위한 지엽적인 정책이 아닌 중년층과 더 나아가 전 세대를 아  
우르는 정책으로 변화
- ④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주거정책의 다변화 모색
  - 기존의 기본계획에서의 고령친화적 주거환경과 관련한 정책과제는 주로 고령자 임대주택 확  
대와 주택개량을 중심으로 진행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변화하는 노인의 주거수요와 욕구에 기반하여 전세임대,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를 접목시킨 공공실버주택,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등 도입
- 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안전 보장
  - 기존 고령사회 교통안전정책: 이동편의시설 설치, 노인보호구역이나 노인운전자 교육프로그  
램 개발 등
  -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높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  
고,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운전취약노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반  
납 권고를 도입하는 등의 계획 포함

[표 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 고령사회 삶의질 제고 관련 과제

구분	세부영역	과제명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1인 1국민연금 확립 연금분할 청구권 제도 확대 기초연금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주택·농지연금 확산	주택연금 대폭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증대 농지연금 확산으로 고령 농업인 노후소득 증대
	퇴직·개인연금활성화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노후준비 여건 확충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금융시스템 개선 노후준비지원 확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고령자 운동 활성화 고령자 질병예방 및 관리 강화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호스피스 활성화 등 후기의료체계 강화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고령친화형 콘텐츠 개발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자원봉사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공익활동 내실화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연계된 국가 평생교육진흥 추진체계
	세대 간 이해 증진	세대간 이해증진 기회 확대 효행장려 풍토 조성 및 확산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기 위한 주거여건 마련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 노인안심생활 지원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 2. 충청남도 노인복지사업 현황

### ○ 충청남도 노인복지사업 재구성

소득보장	- 기초연금 지원
건강보장	- 노인예방접종 - 노인익치사업 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시설 및 재가급여)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문화여가	- 노인사회활동지원(활동비, 전담요원, 경진대회) -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비 지원
	- 실버축제 - 노인복지관 어르신 축제 - 실버종합예술제 - 어르신 자서전 제작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역사문화체험 - 전국노인건강 대축제 출전비 지원 -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대한노인회) - 충청남도 노인회관 개관행사(대한노인회) - 생활시설 어르신 및 종사자 한마당 대회
	-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 노인자원봉사 클럽 경진대회(대한노인회)
	- 노인지도자 양성(경로당 회장단 지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지회장, 분회장등) - 모범경로당 지원 -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지원(경로당),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지원 - 노년시대 신문 보급(경로당) -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 경로당광역센터 운영비 지원 -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행복경로당 컴퓨터 지원, 행복경로당 증개축 -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지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종사자 처우개선
주거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 무료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운영지원
지역사회 돌봄(안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돌봄미구축지원,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3개소) - 재가장기요양기관 자원연계사업(1개소) -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 무료경로식당, 경로당 무료경로식당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24개소)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학대전용쉼터 운영지원,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교통	(해당없음)
기타	-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활동비 지원(대한노인회)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4개소) - 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충남노인복지포털사이트 유지보수비 - 노인복지시설 관리지침

### 3. 논의

-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특성 반영)
- 건강지원 영역에서는 치매, 우울, 자살 등의 노인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노년기 운동 활성화(운동기구 활용방법 교육, 운동증진프로그램 확대 등)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문화여가
  - 경로당 중심의 여가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 중복성, 파편화 → 다양한 문화축제나 문화여가프로그램의 성격이나 참여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패키지화
  - 경로당 이용노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화여가 사각지대(예, 경로당 미이용 노인) 발굴 필요
  - 문화여가 대상을 중고령층까지 포괄 가능성
- 주거지원 영역에서는 기존의 도배장판, 샷시 설치 등에서 탈피하여 공동생활가정 등의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허약노인을 위한 주거모델 개발 등
- 고령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고령운전자, 고령보행자)

# 충남의 Well-Aging 강화를 위한 제안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혜경 교수

## 1. 충남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이 더욱 필요

- 충남의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함(자살, 학대, 고독사 등)
- 나아가, 도내 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으로 고려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함

## 2. 노인을 위한 가족부양지원책 강화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에게 가족의 기능은 중요하고 노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임
- 불효자방지법 (네거티브)
- 효자지원법(포지티브) : 다양한 세제혜택  
올해부터 부모와 함께 살거나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동거주택의 상속공제율이 늘어날 예정, 이 제도로 5억 이하의 주택을 물려주게 된다면 상속세가 100% 면제될 예정)
- 한편, 상속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인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필요
-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세대, 손자녀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

## 3. 경로당지원을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기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

- 가장 많은 노인관련 시설이지만 여전히 사랑방으로서의 기능 이외 기능이 크게 없음
- 대한노인회와의 긴밀한 협조 & 설득 필요

## 4. 도시/농촌의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 도시 노인과 농촌 노인의 삶의 패턴이 많이 다름
- 이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많지 않음

## 5. 복지의 수혜자로서의 노인과 복지의 제공자로서의 노인이 공존하는 충남

- 모든 노인이 복지수혜 대상자라는 인식을 벗어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복지혜택을 포기하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 제공자로서의 모범적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음

## 6. 예비 노인을 위한 정책 필요

- 베이비부머의 노인층 진입을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준비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
- 기업, 지역사회, 가정 내 노후준비에 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필요

## 7. 노인의 건강악화를 예방하는 프로그램

- well-aging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건강유지라고 볼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이 악화되고 난 후의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정책
- 따라서 건강악화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시급(독거노인 대상, 노부부 가족 대상 등)

## 8. well-dying교육

- well-aging의 종착점은 well-dying이라고 볼 수 있음
-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필요

## 9. 중장기적인 수요예측과 대응

- 향후의 노인복지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수요예측을 하면서, 중장기적 대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총남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 10. 총남노인의 Well-Aging을 위한 연구 지원

- 노인이 행복한 총남, 가족이 행복한 총남을 만들기 위한 연구에 정책적 지원도 필요







